

L
639.2026
8-0
2005

발 간 등 록 번 호
11-1520000-000769-01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2005. 3. 31



해양수산부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 FISHERIES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전문개정	1991. 5. 4	농림수산부령	제1075호
개정	1994. 7. 28	농림수산부령	제1148호
	1995. 12. 30	농림수산부령	제1219호
	1997. 3. 24	해양수산부령	제 15호
	1999. 3. 18	해양수산부령	제 107호
	1999. 8. 26	해양수산부령	제 134호
	2001. 2. 7	해양수산부령	제 183호(어장관리법 시행규칙)
	2001. 3. 10	해양수산부령	제 184호
	2002. 4. 9	해양수산부령	제 221호
	2003. 7. 15	해양수산부령	제 251호(기르는 어업 육성법 시행규칙)
	2004. 1. 31	해양수산부령	제 266호
	2004. 8. 7	해양수산부령	제 277호(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등 중 개정령)
	2005. 3. 31	해양수산부령	제 291호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한 어업면허, 어장의 시설기준과 그 관리방법, 관리선의 사용 및 월동장·월하장의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7. 3. 24>

제 2 조 (개발계획의 수립 등) ①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장이용개발계획기본지침(이하 “개발계획기본지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7. 3. 24>

1. 어장이용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수립의 기본방향
2. 지역별 어업의 특성에 따른 어장개발에 관한 사항
3. 삭제 <97. 3. 24>
4. 어장이용개발의 제한·조건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②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세부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7. 3. 24, 99. 3. 18>

1. 개발계획기본지침의 세부사항
2. 어장이용개발의 제한수역 및 제한품종 등에 관한 사항
3. 어장의 재개발 기타 개발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세부지침 및 기본조사 자료에 따라 관할 수면에 대하여

면허하고자 하는 어업의 종류와 면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표 1의 작성방법에 의하여 어장기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장기본도의 축척은 1만분의 1 내지 2만5천분의 1로 하여야 한다. <개정 95·12·30, 97·3·24>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어장기본도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계획서에 의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97·3·24>

⑤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수면에 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고자 하거나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4·7·28, 97·3·24>

1.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개발계획의 승인(협의)요청내역서
2. 승인(협의)요청부분의 수면의 위치와 축척 5만분의 1이상의 구역도
3.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제출을 요하는 서류

⑥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개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을 얻은 내용을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공보에 공고하고, 해당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조합”이라 한다)에 통보하여 지구별조합과 어촌계로 하여금 그 공고내용을 게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7·3·24>

⑦삭제 <95·12·30>

제3조 (공동신청시의 변경신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면허를 공동으로 신청한 자가 신청후에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그 신청한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7·28>

1. 대표자의 자격 및 그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대표자를 선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한한다)
2. 신청인의 지분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지분을 변경한 경우에 한한다)

제3조의2 (외국인에 대한 어업의 면허) ①영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어업면허에 관한 협의요청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요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협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수면의 위치와 축척 5만분의 1이상의 구역도
2. 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수산업조정위원회심의회 사본
3. 당해 어업면허의 우선순위의 결정을 위한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심의자료표 사본
4. 해당 어업면허처분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 및 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종합의견서

③해양수산부장관이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어업면허에 관한 협의요청을 받은 경우 영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을 할 것인지의 여부
2. 어업면허시 관련어업과 어촌계등 공동이익의 증진에 미치는 영향
3. 해당 외국의 수산관계법령과의 상호관계

[본조신설 97·3·24]

제 4 조 (우선순위결정의 신청등) ①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수면에 대하여 우선순위의 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12·30, 97·3·24>

1. 삭제 <95·12·30>
2. 수산기술자의 자격 또는 경력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수산기술자에 한한다)
3. 신청일 현재 취득하고 있는 어업면허증 및 어업허가증 사본(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한다)
4. 어업에 종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어업에 종사한 자에 한한다)
5. 포기하고자 하는 어업권의 면허증 사본(법 제13조제4항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6. 여권 사본(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자료표를 작성하여 면허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97·3·24>

③영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④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를 받은 자는 어업면허신청을 하여야 할 기간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면허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면허신청기간만료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의하여 그 신청기간의 연장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면허신청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94·7·28, 97·3·24>

⑤시장·군수·구청장은 면허우선순위의 결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다음 순위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4·7·28>

1. 면허신청기간의 연장승인을 신청함이 없이 면허신청기간내에 어업의 면허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어업면허신청기간의 연장승인을 얻고 그 승인기간내에 어업면허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제 5 조 (면허신청등)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당해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7·28, 95·12·30>

1. 면허를 받고자 하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2. 삭제 <97·3·24>
3. 면허를 받고자 하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의 동의서. 다만, 현재의 어업권자보다 앞서 면허를 받았던 자가 동일한 어장에서 동종어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 그 어업권자의 동의를 얻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서로 갈음한다.
4. 내지 6. 삭제 <97·3·24>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어업의 면허를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어업면허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함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를 어업면허증 사본에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한 어업의 종류별 어업권관리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4·7·28, 95·12·30, 97·3·24>

1. 면허번호
2. 어업의 종류·어구의 명칭 및 양식방법
3. 어장의 위치 및 구역
4. 포획·채취물 또는 양식물의 종류
5. 양식어장의 시설량
6. 어업의 시기
7. 면허유효기간
8. 면허일자
9. 어업권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으로 하되, 법인이 아닌 어촌계의 경우에는 어촌계명을 말한다)·주소와 주민등록번호
10. 어업의 제한 또는 조건

제 5 조의 2 (다른 어업과의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면허를 하는 때에는 다른 어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

[전문개정 99·3·18]

제5조의3 (대단위개발수면의 규모 및 운영등) ①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단위 개발수면의 규모는 60헥타르이상으로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헥타르미만의 범위안에서 그 규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99·3·18>

②지구별조합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단위개발수면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9·3·18>

1. 양식시설 및 생산계획
2. 종묘수급계획
3. 대단위개발수면의 어장정비·정리 및 청소계획
4. 대단위개발수면의 운영 및 관리계획등

③지구별조합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단위개발수면의 운영계획의 수립등을 위하여 지구별조합에 11인이상의 위원으로 대단위개발수면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이상은 대단위개발수면에서 법 제8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해조류양식어업·패류양식어업·어류등양식어업·복합양식어업 및 협동양식어업(이하 “양식어업”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어업인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99·3·18>

[본조신설 97·3·24]

제6조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고자 하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는 어장기본도 및 별표 2의 작성례에 의하여 작성하되, 그 표시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점의 선정 : 「측량법」 또는 「지적법」에 의한 삼각점을 기점으로 하여 이를 직접사용하거나 그 삼각점에 의한 보조기점을 정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삼각점을 사용할 수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해안의 특정기점을 정하여 사용하되, 그 기점이 위치한 장소의 지번(지번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기재하고, 인접지형의 고유 명칭을 같이 기재한다.
2. 보조기점 및 각점의 표시 : 삼각점 및 보조기점으로부터의 방위각·거리(미터) 및 엑스·와이좌표(평면직각중횡선수치)로 표시한다.

3. 특정기점 및 각점의 표시 : 특정기점으로부터 방위각 및 거리(미터)로 표시한다.
4. 방위각은 진북 0도를 기준으로 하여 시계바늘의 회전방향으로 측정·표시한다.

[전문개정 94·7·28]

제 7 조 (동의서등) 제5조제1항제3호 본문 또는 제2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동의서에는 그 동의기간을 기재하고 동의대상구역도(어촌계의 경우에는 총회의사록 사본)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4·7·28>

제 8 조 삭제 <97·3·24>

제 9 조 (면허의 금지)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면허신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업면허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4·7·28, 2005·3·31>

1. 어업권의 취소로 보상받은 수면의 경우. 다만, 당해 보상기관과 협의하여 면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의 계획이 확정되어 고시된 수면으로서 어업권보상이 명백히 예상되는 수면인 경우. 다만,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면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 10 조 삭제 <97·3·24>

제 11 조 (양식어업의 양식방법등) 양식어업의 종류별 양식방법, 어장의 수심, 어장구역의 한계와 어장사이의 거리등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어장의 수심에 대하여는 별표 3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양식물의 종류, 시설방법, 어장오염의 정도, 해역별 특성 및 다른 어업에 미치는 영향등 어업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1·3·10>

[전문개정 97·3·24]

제 12 조 (정치망어업의 보호구역) ①삭제 <99·3·18>

②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정치망어업의 보호구역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97·3·24]

제 13 조 (정치망어업의 가두리시설)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망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당해 어업권의 어장구역안에 그 어장에서 포획한 어획물을 일시적으로 가두어 둘 수 있는 시설(이하 “가두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가두리시설은 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시설·사용하여야 한다.

1. 가두리시설의 총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이내일 것
2. 당해연도의 어업시기가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시설물중 어망을 철거할 것
3. 가두리시설이 어장면적 및 어획물의 종류에 적합할 것
4. 가두리시설안에 사료급여를 하는 등 양식목적으로 사용하지 말 것

[전문개정 94·7·28]

제 14 조 (가두리시설의 설치통지등) ①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두리시설을 설치한 자는 시설설치일부터 15일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정치망 어업권의 어장구역도상에 도면으로 표시한 가두리시설의 위치와 구역도
2. 가두리시설의 세부설계도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는 때에는 당해 시설이 제13조제2항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대장에 이를 기재한 후 지체없이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가두리시설설치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4·7·28]

제 15 조 (어장의 시설기준 등) ①법 제8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식어업의 어업권자가 시설하여야 할 양식어장의 시설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97·3·24>

②양식어업의 어업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의하여 양식어업의 어장에 종묘를 살포 또는 입식(이하 “살포”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여 그 살포일 3일전까지 종묘살포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종묘살포량이 시설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4·7·28, 97·3·2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종묘살포에 관하여 특히 기술지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당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종묘살포에 관한 기술지도를 하여야 한다. <개정 99·3·18>

제 16 조 (마을어업의 포획·채취방법 등) 마을어업권자는 마을어업의 어장구역안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구를 사용하여 이를 포획·채취하여야 한다. 다만, 마을어업의 어장구역안의 수심이 깊어 다음 각호의 어구에 의한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가 불가능한 곳에서는 별표 7에서 정하는 포획·채취방법에 의한다. <개정 94·7·28, 97·3·24>

1. 낚·호미·칼·괭이 또는 삽
2. 해조틀이 또는 갈퀴류
3. 통발 또는 문어단지
4. 추진장치가 없거나 고무줄을 이용하는 작살류

제 16 조의 2 (패류양식어업의 포획·채취방법 등) ①패류양식어업중 키조개양식어업을 하는 자가 양식물을 포획·채취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잠수기를 사용하여 이를 포획·채취할 수 있다.

1. 컴프레서 : 관리선 1척당 1대
2. 잠수인원 : 1명
3. 분사기 : 사용금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잠수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관리선을 이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4·9]

제 16 조의 3 (포획·채취금지해제허가신청) ①마을어업권자가 「수산자원보호령」 제15조 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마을어장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기 위한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의한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금지해제허가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3·24, 2004·1·31>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의 허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6호의3서식에 의한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금지해제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4·7·28]

제 17 조 (낙도 등에 대한 마을어업의 면허) 시장·군수·구청장이 영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도 또는 무인도와 연결된 수면에 대하여 마을어업의 면허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4·7·28, 97·3·24>

1. 해양수산부장관이 국방·군사상 또는 외교상 어업의 면허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서와 연결된 수면
2. 어촌계 또는 지구별조합의 육지쪽의 해안선으로부터 무인도까지의 가장 가까운 거리가 2천미터(서해안의 경우에는 4천미터) 미만인 무인도에 연결된 수면, 이 경우 육지쪽 해안선과 무인도까지의 거리는 만조시를 기준으로 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마을어업면허대상수면의 외측수역에 있는 무인도로서 당해 무인도가 어촌계 또는 지구별조합의 소유로 되어 있는 등의 사유로 무인도에 연결된

수면이 어업조정상 분쟁의 우려가 없고, 공동관리가 용이한 것으로 인정되는 수면
4. 어촌계의 계원 또는 지구별조합의 조합원이 5명 이상 거주하고 있는 낙도와 연결된 수면

제 18 조 삭제 <97·3·24>

제 19 조 (어장면적기준의 완화) 시장·군수·구청장이 영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어장면적의 기준을 초과하여 면허할 수 있는 경우는 대통령령 제13308호 「수산업법 시행령」의 시행일 이전에 면허된 어류등양식어업의 축제식양식어업으로서 당해 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그 어업권이 소멸된 경우에 당해 어업권의 어장면적과 동일한 어장면적의 범위안에서 당해 어업권의 품종과 동일한 품종을 양식하기 위하여 다시 면허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94·7·28, 97·3·24>

제 20 조 삭제 <97·3·24>

제 21 조 (어업면허유효기간의 연장허가신청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전 4월부터 3월까지의 사이에 어업권자에게 제2항의 어업면허유효기간 연장허가를 받도록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94·7·28>

②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면허유효기간에 대한 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면허기간이 만료되기전 3월부터 15일까지의 사이에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당해 어업권의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어업권에 관하여 등록된 권리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면허기간이 만료되기 전 2월부터 5일까지의 사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7·28, 97·3·24>

③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어업권의 어장구역에 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거나 협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4·7·28>

1.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어업면허유효기간의 연장승인(협의)요청내역서
2. 어장의 위치 및 축척 5만분의 1이상의 구역도
3.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제출을 요하는 서류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면허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4·7·28>

⑤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권에 관하여 등록된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기간연장을 허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당해 어업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4·7·28>

1. 신청인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와 주민등록번호

2. 연장신청의 사유

3. 허가내용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어업권자가 그 어업권을 포기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포기신고서에 당해 어업권에 관하여 등록된 권리자의 동의서 및 어업면허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7·28, 97·3·24>

제 22 조 (어업권이전인가신청 등) ①어업권자는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권(어업권공유자의 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전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7·28, 97·3·24, 2004·1·31>

1. 어업권자의 인감증명서

2. 당해 어업권에 관하여 등록된 권리자의 동의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이전의 인가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인가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현지확인조사를 한 후 별지 제22호서식의 어업권(지분)이전인가신청에 대한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94·7·28, 97·3·24, 2001·3·10>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권이전의 인가를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 인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4·7·28, 97·3·24>

제 23 조 (어업권분할인가신청 등) ①어업권자는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권분할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7·28, 97·3·24, 2004·1·31>

1. 분할하고자 하는 어장의 위치와 구역도

2. 당해 어업권에 관하여 등록된 권리자의 동의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분할의 인가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인가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현지확인조사를 한 후 별지 제25호서식의 어업권분할인가신청에 대한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94·7·28, 97·3·24, 2001·3·10>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권분할의 인가를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 인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4·7·28, 97·3·24>

제 24 조 (어업권변경인가신청 등) ①어업권자는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 인가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양식어업의 양식방법
2. 양식어장의 시설량
3. 양식어업의 양식물의 종류와 정치망어업의 포획물의 종류
4. 양식어업의 종류
5. 어업의 시기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9·3·18>

1. 어업면허증
2. 당해 어업권에 관하여 등록된 권리자의 동의서
3. 어장구역과 어장구역, 어장구역과 보호구역이 서로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의 동의서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변경인가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인가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현지확인조사를 한 후 별지 제25호서식의 어업권변경인가신청에 대한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1·3·10>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권변경의 인가를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 인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7·3·24]

제 25 조 (어업면허증의 재교부신청) ①삭제 <99·3·18>

②영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면허증재교부신청서는 별지 제28호서식과 같다. <개정 97·3·24>

제 26 조 (관리선사용의 지정 또는 승인신청 등) ①어업권자는 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선사용의 지정을 받고자 하거나 다른 어장에서 지정받은 관리선 또는 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의 어선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7·28, 95·12·30, 97·3·24, 99·3·18, 2002·4·9, 2004·1·31>

1. 관리선의 사용지정의 경우에는 「어선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국적증서·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 이 경우 타인 소유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선박등기부등본(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의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어선사용승인의 경우에는 관리선 사용지정증 사본 또는 어업허가증사본

3.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어촌계의 경우에는 그 어촌계의 총회의사록 사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선 사용의 지정기간과 승인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양식장형망선 또는 형망어업이 허가된 어선에 대한 사용승인의 유효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2·4·9>

1. 관리선 사용의 지정기간은 당해 어선이 「어선법 시행규칙」 제4조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어선인 경우에는 당해 면허어업의 유효기간, 당해 어선이 다른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어업에 사용되고 있는 어선인 경우에는 그 면허·허가 또는 신고어업의 유효기간 이내에서 관리선을 사용하고자 하는 어장의 면허의 유효기간

2. 관리선사용의 승인기간은 당해 어선이 지정받은 어선인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 법 제41조제1항제1호·제2항제1호·제3항 또는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았거나 신고한 어업에 사용되고 있는 어선인 경우에는 당해 허가 또는 신고어업의 유효기간 이내에서 관리선을 사용하고자 하는 어장의 면허의 유효기간

③삭제 <99·3·18>

④시장·군수·구청장은 마을어업권자가 신청한 양식장형망선 또는 형망어업이 허가된 어선에 대한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그 어장의 수산자원보호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생산허용량을 정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97·3·24>

⑤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선을 지정하거나 어선에 대한 사용승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 관리선지정(어선사용승인)대장 및 별지 제41호서식의 어업의 종류별 어업권관리대장에 기재하고 지체없이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 관리선지정(어선사용승인)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4·7·28, 95·12·30, 99·3·18>

⑥어업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관리선 또는 사용승인을 얻은 어선을 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리선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어선의 사용승인을 취소할 때에는 해제 또는 취소일 7일전까지 당해 어업권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94·7·28>

⑦시장·군수·구청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선의 지정이 해제되거나 어선사용의 승인이 취소된 관리선·어선에 대하여는 그 해제 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어업권자에 대하여 새로운 지정 또는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94·7·28>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관리선 또는 사용승인을 얻은 어선은 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신설 94·7·28, 97·3·24, 2002·4·9>

1.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업자 등의 운송 또는 포획·채취한 수산동식물의 운반
2. 어장에서 양식하거나 서식하는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3. 어장의 오물청소·해적생물 제거
4. 어장의 경비 또는 불법어업의 감시
5. 어장의 수산자원조성
6. 기타 어장의 보호·관리에 관한 용도

⑨제5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선지정(어선사용승인)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재교부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되, 훼손한 경우에는 관리선지정(어선사용승인)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95·12·30>

제 26 조의 2 (관리선사용지정증 또는 어선사용승인증의 반납) 어업권자 또는 어업권의 행사자는 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해당일부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선사용지정증 또는 어선사용승인증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 어업면허가 취소 또는 이전된 때
2. 어업권의 행사계약이 해지된 때
3. 사용승인을 얻은 어선이 폐선되거나 소유자가 변경된 때
4. 법 제27조 및 이 규칙 제2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선의 지정이 해제되거나 어선사용의 승인이 취소된 때

[본조신설 97·3·24]

제 26 조의 3 (지정 또는 사용승인을 얻은 관리선의 기재사항변경) 어업권자 또는 어업권의 행사자는 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또는 사용승인을 얻은 관리선의 기관마력·어선톤수 및 이용장비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8호의3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기재사항의 변경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2·4·9>

1. 관리선사용지정증 또는 어선사용승인증

2. 「선박안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증서 사본

[본조신설 97·3·24]

제 27 조 (관리선의 규모 등) ①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선으로 사용하도록 지정받을 수 있는 자원관리채취선의 규모는 총톤수 5톤 미만으로 한다. <개정 99·3·18>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식장형망선을 관리선으로 사용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어업권자의 소유어선 또는 임차어선에 한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95·12·30>

③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자원의 증식·보호와 어업조정상 필요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식장형망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시·군·구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95·12·30, 97·3·24>

④제1항의 관리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관리선의 어업종류별 규모는 별표 8과 같다. <신설 94·7·28>

⑤제4항의 관리선의 어업종류별·양식방법별·어장규모별 및 어구명칭별 관리선의 척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다. <신설 94·7·28, 95·12·30, 97·3·24>

제 28 조 (월동구역 또는 월하구역의 지정고시 등)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수면에 대하여 월동구역 또는 월하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7·3·24>

1. 월동구역 또는 월하구역의 위치와 구역
2. 월동 또는 월하를 시킬 수 있는 양식물의 종류
3. 월동구역 또는 월하구역의 지정기간
4. 월동구역 또는 월하구역에서의 월동 또는 월하에 방해가 되는 행위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②및 ③삭제 <99·8·26>

④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월동장 또는 월하장의 사용기간은 당해 양식어업권의 면허의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개정 97·3·24, 99·8·26>

제 29 조 (휴업 등의 신고) ①어업권을 취득하여 어업을 하는 자가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을 하거나 휴업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당해 어업권의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7·28, 2005·3·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신고 또는 휴업기간연장신고를 한 자가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신고한 휴업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어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별지 제36호서식에 의한 어업재개신고서를 당해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7·28, 2005·3·31>

제 30 조 (타인지배의 한계) 어업권자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사실상 당해 어업의 경영을 지배하게 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경우로 한다.

1. 당해 어업의 경영에 있어서 순이익의 100분의 50이상을 타인이 차지하는 경우
2. 어업의 면허를 받은 후에 그 어구·어선 또는 시설이 타인의 소유 또는 점유에 속하게 되는 경우

제 30 조의 2 (공익상 필요한 어업의 제한등에 관한 기준·절차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제한·정지 또는 면허취소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어업의 종류와 실태, 면허의 조건 및 규모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②면허된 어업의 제한·정지처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당해 어업의 어장구역의 일부가 어업을 계속하여 할 수 없는 수면에 해당하는 경우
2. 당해 어업의 어업시기중 일부가 어업을 할 수 없는 시기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34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어업을 제한·정지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어업면허의 취소처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당해 어업의 조업수역 전부가 계속하여 어업을 할 수 없는 수면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34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어업을 취소처분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94·7·28]

제 31 조 (어업권의 취소의 통지)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의 면허를 취소한 경우에는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당해 어업권에 관하여 등록된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4·7·28>

1. 어업의 종류·어구의 명칭 및 양식방법
2. 어업면허번호
3. 어업면허기간
4. 어업면허의 취소사유 및 취소일자
5. 어업권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취지 및 그 신청기간

제 32 조 (변경사항등의 신고) 어업권자가 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면허사항의 변경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일로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

정 94·7·28, 95·12·30, 97·3·24, 2005·3·31>

1. 어업면허증(어업권자의 경우에 한한다)
2.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 32 조의 2 (면허어업의 취소) ①어업권자가 법 제35조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어업권자는 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그 해당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05·3·31>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그 신고인에게 법 제35조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도록 자격을 갖추거나 어업권을 양도 또는 포기하지 아니하면 그 어업권을 취소하게 됨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정기간내에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정기간내에 어업권을 양도 또는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97·3·24]

제 33 조 (면허어업에 관한 변경·취소등의 공고)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7·3·24>

1. 어업의 종류, 어구의 명칭 및 양식방법
2. 면허번호 및 면허기간
3. 어장의 위치와 구역
4. 처분내용
5. 처분연월일
6. 어업권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으로 하되, 법인이 아닌 어촌계의 경우에는 어촌계명을 말한다)·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제 34 조 (어업권포기의 신고) ①어업권자는 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장구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고자 하거나 2인이상의 자가 공유로 취득한 어업권에 대한 지분의 일부를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7·2, 95·12·30, 2005·3·31>

1. 어업면허증
2. 당해 어업권에 관하여 등록된 권리자의 동의서

②법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수면에 어업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수면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동종어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해의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당해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당해 어업권자에 대하여 다른 수면에서 우선적으로 면허하는 때에 그 어업권의 폐지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94·7·28, 97·3·24>

제 35 조 (자원의 조사 및 보고) ①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여야 할 대상어업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어업, 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 면허를 받은 어업으로 한다.

②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양식어장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 1회로 하고, 양식어장의 경우에는 그 양식물의 1양식기간동안 1회로 한다. 다만, 양식시설의 적정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2회 이상 보고를 받을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38호서식에 의하고, 보고의 시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현지확인을 거친 후 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한 어업의 종류별 어업권관리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1·3·10]

제 36 조 삭제 <99·3·18>

제 37 조 (행사의 우선순위) ①법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장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어업권행사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1. 당해 어장에서 어업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는 자
2. 다른 어장에서 동종어업의 어업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는 자
3. 다른 어장에서 다른 종류의 어업의 어업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는 자
4. 어업권을 행사한 실적이 없는 자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동순위자 상호간에 있어서는 어업권의 행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어업권의 행사계약기간이 만료된 날까지의 기간이 가장 짧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③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동순위자 사이의 우선순위는 다음의 순서에 의한다.

1. 취득하고 있는 어업권이 없는 자
2. 취득하고 있는 어업권의 어장면적이 가장 적은 자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순위자 사이의 우선순위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94·7·28>

⑤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어촌계 또는 지구별조합이 취득한 어업권의 어장에 대하여 다수어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어업별 또는 품종별 어장면적의 범위에 따라 행사자수의 하한선을 정하거나 어업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그 행사횟수 또는 총행사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94·7·28>

제 38 조 삭제 <99·8·26>

제 39 조 (어장관리규약의 내용)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어장관리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 어장에 입어하거나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자격
2. 입어방법·입어기간·어업권의 행사방법 또는 그 행사기간
3. 어업권행사의 우선순위
4. 어업권의 행사자 수 또는 입어자의 수
5. 사용하고자 하는 관리선 또는 어업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업의 어선의 종류와 그 사용 및 관리방법
6. 어업의 시기
7. 어장의 시설물 및 사용어구의 종류
8. 자원조성, 유해생물제거, 어장청소등 어장관리방법에 관한 사항
9. 포획·채취하고자 하는 수산동식물의 금지체장 및 금지시기등 자원보호·관리와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10. 행사료와 입어료의 징수등 회계에 관한 사항

제 40 조 (어업권의 행사계약등) ①어촌계 또는 지구별조합은 그 취득한 어업권의 어장에 대하여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장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어장에서 어업권의 행사 또는 입어를 하고자 하는 자와 어업권의 행사계약 또는 입어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97·3·24, 99·8·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행사 또는 입어계약기간은 그 계약체결일부터 2년 이상 3년이내로 한다. 다만,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의 잔여기간 또는 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따른 한정어업면허의 면허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한다. <개정 97·3·24, 2004·1·31>

③어촌계 또는 지구별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한 어업권의

행사계약 또는 입어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지하기전 7일전까지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94·7·28>

1. 어업권의 행사자 또는 입어자가 주소를 소속지구별조합의 업무구역밖으로 이전한 경우

2. 어업권의 행사자가 그 행사하는 어업권을 타인으로 하여금 행사하도록 하거나 어업권의 어장에 입어하는 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그 어장에 입어하도록 한 경우

3. 어업권의 행사자 또는 입어자가 그 어업권을 법 제3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행사하거나 입어한 경우

④어촌계 또는 지구별조합이 징수한 행사료 또는 입어료는 공동이익의 증진 및 지구별조합 또는 어촌계의 총회에서 결정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94·7·28>

제 41 조 삭제 <2004·1·31>

제 42 조 (입어에 관한 처분의 통지)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면허한 어업을 제한·정지하거나 면허를 취소하거나 입어를 제한·정지 또는 금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해당 어업권자 또는 입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4·7·28>

제 42 조의 2 (표지의 설치) ①영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장의 기점표지 및 어장구역표지와 그 설치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조기점 또는 특정기점(이하 “기점”이라 한다)에는 영구적으로 보존될 수 있는 물체를 설치(기점에 현존하는 고정물의 이용을 포함한다)하고, 그 물체에 가로 30센티미터, 세로 20센티미터 크기의 직사각형표지를 하되 그 바탕은 흰색으로 칠하고 그 위에 어업의 종류 및 면허번호를 흑색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2. 어장구역의 경계에는 야간에도 그 범위를 식별할 수 있는 표지시설을 하여야 하며, 그 표지시설의 설치방법과 기준은 시·도지사가 정한다.

②삭제 <99·3·18>

[본조신설 94·7·28]

제 43 조 (어장시설물의 철거의무기간등) ①법 제58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어업권이 소멸된 날 또는 어업시기가 종료된 날부터 30일이내를 말한다. <개정 97·3·24>

②어업권자는 법 제5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어장에 설치한 시설물 또는 양식물의 철거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내에 별지 제46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당해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7·28>

③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시설물 또는 양식물을 철거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어업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승인신청은 별지 제46호서식에 의한다. <신설 95·12·30, 99·3·18>

1. 철거대상 시설물 또는 양식물의 수량이 과다하거나 철거장비가 부족한 경우
2. 천재·지변으로 철거작업이 곤란한 경우

제 44 조 내지 제 47 조 삭제 <99·8·26>

제 48 조 삭제 <94·7·28>

제 49 조 삭제 <2001·2·7>

제 49 조의 2 삭제 <99·8·26>

제 50 조 (보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면허등 어업권에 관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매 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5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매 년도 1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별지 제52호서식에 의하여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7·3·24>

[전문개정 94·7·28]

제 51 조 (보상청구서) ①영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서는 별지 제55호서식과 같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손실액과 그 내역 및 산출방법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51 조의 2 (손실액조사기관의 지정등) ①영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액조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수산에 관한 전문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은 별지 제55호의2서식에 의한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손실액조사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3·24>

1. 손실액조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이유
2. 손실액조사에 참여하는 조사자의 인적사항(이력서 및 최근 3년간 손실액의 조사실적등을 포함한다)
3. 어업의 종류별 손실액 조사방법
4. 손실액조사에 사용하는 어선·어구등 장비의 종류 및 조달방법

5.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의 최근 3년간의 손실액 조사실적(해당자에 한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기관을 손실액조사기관으로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5호의3서식에 의한 손실액조사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7·3·2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액조사기관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④손실액조사기관은 손실액을 조사한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사자료 2부를 작성하여 손실액을 조사한 수면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상의 근거법령
2. 손실액조사에 참여한 자의 인적사항
3. 손실액을 조사한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4. 손실액 조사기간
5. 어업별 손실액 및 그 총손실액
6. 어업의 종류별, 어구의 명칭별 또는 양식방법별 손실액의 산출방법 및 근거법령
7. 어업의 종류별 손실액조사에 사용한 어선·어구등 장비의 종류
8. 어업별 손실액조사에 따른 조사경비 및 수수료 내역
9. 기타 손실액 조사에 필요하다고 행정관청이 정하는 사항

⑤행정관청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액조사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보상 업무에 활용하여야 한다.

⑥삭제 <97·3·24>

[본조신설 94·7·28]

제 52 조 (재결신청서등) ①영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삭제 <99·8·26>
2. 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어에 관한 분쟁의 경우 : 별지 제57호서식
3. 법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장구역등에 관한 분쟁의 경우 : 별지 제58호서식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9·8·26>

1. 관계인과의 협의경위서
2. 삭제 <99·8·26>
3. 신청인 및 그 상대방의 어장도(제1항제3호의 경우에 한한다)
4. 신청서부분(제1항제3호의 경우에 한한다)

③영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서는 별지 제59호서식과 같다.

제 53 조 삭제 <2003·7·15>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양식어장의 청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식어업권을 취득한 자는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이내에 당해 어장의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94·7·28 농림수산부령114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령의 폐지) 농수산부령 제672호 양식물에대한채포제한적용해제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관리선의 규모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어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으로 등록되어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받은 어업의 어장에서 관리선으로 사용중인 어선의 경우에는 제2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어선이 폐선될 때까지 당해 어업의 어장에 한하여 관리선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 (손실액조사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수산청고시에 의하여 지정된 어업권등 보상을 위한 손실액의 조사전문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간 이 규칙에 의하여 지정된 손실액조사기관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손실액조사기관으로 지정받지 못한 기관으로서 그 기간종료전에 체결된 손실액조사계약에 의한 손실액조사업무가 종료되지 아니한 기관은 당해 계약에 한하여 이 규칙에 의한 손실액조사기관으로 보아 그 업무를 행할 수 있다.

부 칙 <95·12·30 농림수산부령1219>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3·24 해양수산부령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어업면허신청의 연장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면허신청기간의 연장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한 어업면허신청의 연장기간은 제4조제4

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정치망어업의 보호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정치망어업의 보호구역은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이미 체결한 행사 또는 입어 계약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행사 또는 입어 계약기간은 당해 계약에 한하여 제4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양식어업의 양식방법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받은 해조류양식어업중 일본홍·죽홍을 이용하는 건홍식양식어업과 패류양식어업중 일본홍을 이용하는 건홍식양식어업의 양식방법·양식물·어장의 수심 및 어장의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는 별표 3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99·3·18 해양수산부령10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양식어장의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별표 6의 규정에 의하여 양식어업의 어업권자가 시설한 양식어장시설은 이 규칙에 의하여 시설한 양식어장시설로 본다.

부 칙 <99·8·26 해양수산부령13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01·2·7 해양수산부령18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01·3·10 해양수산부령18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01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4·9 해양수산부령2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II. 개별기준 1. 마목에 제7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패류양식어업의 키조개양식어장에서 잠수기 사용방법을 위반한 때	제16조의2	경고	경고	취소
--------------------------------------	--------	----	----	----

부 칙 <2004·1·31 해양수산부령26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 제1호가목 1. 건홍식 지주망홍 및 부류망홍 김·파래의 시설기준, 동표 제4호가목 2. 건홍식과 연승식 김의 시설기준 및 동호다목 1. 건홍식과 살포식 김의 시설기준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굴 양식어장의 시설규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연승식 굴의 시설규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설한 굴 양식어장은 별표 6 제2호 가목의 연승식 굴의 시설규모에 관한 개정규정에 따라 시설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5·3·31 해양수산부령2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 제32조, 제34조제1항, 별표 3 제4호다목 및 라목, 별표 6 제4호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어장기본도의 작성방법(제 2 조제 3 항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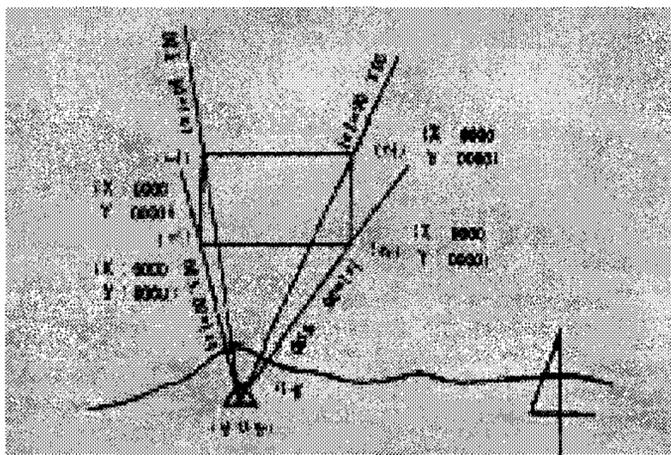
1. 어장기본도의 어장의 구획표시는 다음에 의한다.
 - 가. 어장기본도에는 이미 면허된 어장의 구획, 어업의 종류, 시설방법, 면허번호 및 어장의 면적(제곱미터로 표시한다. 이하 같다)을 표시한다.
 - 나. 어장기본도에는 이동명칭과 어장에 인접한 특정물체의 고유명칭을 같이 써서 개발하고자 하는 어장의 육상기점을 정하고, 육상기점으로부터 방위각과 거리(미터로 표시한다. 이하 같다)로 각 점을 정하여 이들 각 점을 연결함으로써 구역을 확정하고 면적을 표시하되, 방위각 측정은 진북 0도를 기준으로 하여 시계바늘 회전방향으로 1회전을 360도로 하여 표시한다.
2. 기존어장과 개발하고자 하는 어장에 대한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되, 기존어장의 구획선은 실선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어장의 구획선은 점선으로 표시한다.
 - 가. 정치망어장 : 홍색
 - 나. 해조류양식어장 : 주황색
 - 다. 패류양식어장 : 황색
 - 라. 어류등양식어장 : 녹색
 - 마. 복합양식어장 : 청색
 - 바. 협동양식어장 : 남색
 - 사. 마을어장 : 자색
3. 어장간의 거리와 어장구역의 획정은 다음에 의한다.
 - 가. 조수로등을 참작하고 어장간의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어업분쟁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이용이 규제되는 수면인 경우에는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 나. 어업별 어장구역의 획정기준은 다음에 의한다.
 - (1) 양식어장구역 : 별표 3에 의한 양식어업의 종류 및 양식방법에 따라 어장을 구획하되 어장의 수심, 어장구역의 한계, 어장간의 거리등 어장의 시설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 (2) 정치망어장구역 : 정치망어장은 과거의 어업실적과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종류별로 어장의 적지여부 및 보호구역을 참작하여 어장을 구획하여야 한다.
 - (3) 마을어장구역 : 마을어장은 어촌계의 계원 또는 지구별조합의 조합원이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구획하되, 어장의 수심을 미리 실측하여 어장수심한계의 범위안에서 어장을 구획하여야 한다.
 - 다. 제 5 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수면에 2종이상의 어업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된 어업에 지장이 없고, 수면의 종합적 이용이 가능하며, 어업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2] <개정 97.3.24>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의 작성례(제 6 조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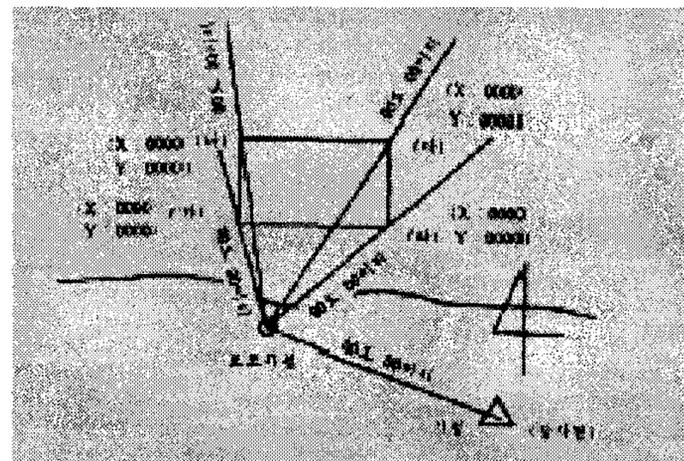
1. 어업의 종류 :
2. 양식방법 :
3. 수면의 위치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인접
4. 기점 및 각점
 - 보조기점 및 특정기점 :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지번 : ○번, 수량갑 백암정단)
 - 각점 : 기점(삼각점)·보조기점 또는 특정기점으로부터,
(가) : ○○도 ○○미터의 점 및 X·Y 좌표
(나) : ○○도 ○○미터의 점 및 X·Y 좌표
(다) : ○○도 ○○미터의 점 및 X·Y 좌표
(라) : ○○도 ○○미터의 점 및 X·Y 좌표
5. 수면의 구역 : 아래 도면에서 (가)(나)(다)(라)를 순차로 연결한 선에 의하여 둘러싸인 수면

○기점(삼각점)을 직접 사용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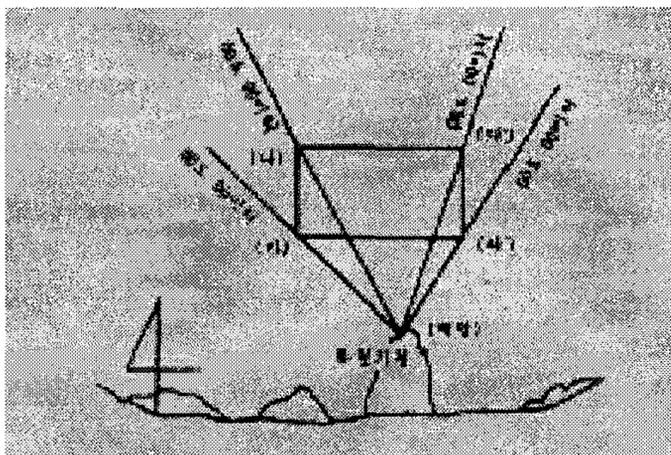
○○도 ○○군 ○○면 ○○리 ○○번지

○보조기점을 사용한 경우



○○도 ○○군 ○○면 ○○리 ○○번지

○보조기점을 사용한 경우



○○도 ○○군 ○○면 ○○리 ○○번지

6. 삭제 <97.3.24>

48277-26011번
93. 12. 13 승인

257mm×364mm
(인쇄용지(2급) 60g/m²)

[별표 3] <개정 2005.3.31>

양식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양식물, 어장의 수심, 어장구역의 한계 및 어장사이의 거리(제11조관련)

1. 해조류양식어업

양식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양 식 물	어장의 수심 (단위:미터)	어장구역의 한계 (단위:헥타르)		어장사이의 거리 (단위:미터)
				어 촌 계 (지구별조합)	어촌계(지 구별조합) 외의 자	
가. 수 하 식 양식어업	1. 건홍식	김, 파래, 매생이	7 이내	1 이상	1 내지 20	200 이상
	• 지주망홍	김, 파래, 매생이	40 이내	1 이상	1 내지 20	200 이상
	• 부류망홍	김, 파래, 매생이	40 이내	1 이상	1 내지 20	200 이상
	2. 연승식	미역·다시마·툫·파래·갈래곰보 기타 유용수산물	30 이내(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강원도·경상북도 및 제주도의 경우에는 40 이내)	1 내지 20	1 내지 20	100 이상
나. 바 닥 식 양식어업	1. 투석식	돌김·우뭇가사리·	30 이내	1 내지 30	1 내지 20	200 이상
	• 천 해	꼬시래기 기타 유용수산물				

2. 패류양식어업

양식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양 식 물	어장의 수심 (단위:미터)	어장구역의 한계 (단위:헥타르)		어장사이의 거리 (단위:미터)
				어 촌 계 (지구별조합)	어촌계(지 구별조합) 외의 자	
가. 수 하 식 양식어업	1. 간이식	굴 기타 패류	2 이내	1 내지 5	1 내지 5	100 이상
	2. 연승식	굴·전복·진주조개·홍합·가리비 기타 패류	30 이내(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강원도 및 경상북도의 경우에는 70 이내, 제주도의 경우에는 40 이내)	1 내지 20	1 내지 20	100 이상
나. 바 닥 식 양식어업	3. 펫목식	굴·진주조개 기타 패류	30 이내	1 내지 30	1 내지 20	100 이상
	1. 살포식	백합·고막·바지락·가무락·동죽·개량조개 기타 패류	0	1 내지 100	1 내지 20	100 이상
	• 간석지					
	• 천 해	피조개·새고막·가리비·키조개·전복 기타 패류	40 이내(강원도의 가리비 양식의 경우에는 50 이내)	1 내지 30	1 내지 20	100 이상
다. 가 두 리 식 양식어업	2. 투석식등	굴	0	1 내지 20	1 내지 20	100 이상
	• 간석지					
	• 천 해	전복·소라 기타 패류	30 이내	1 내지 30	1 내지 20	100 이상
	3. 침하식	전복	30 이내	0.5 내지 10	0.5 내지 5	100 이상
	• 천 해	전복 기타 패류	30 이내	0.5 내지 10	0.5 내지 10	100 이상

3. 어류등양식어업

양식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양 식 물	어장의 수심 (단위:미터)	어장구역의 한계 (단위:헥타르)		어장사이의 거리 (단위:미터)
				어 촌 계 (지구별조합)	어촌계(지구별조합) 외의 자	
가. 가두리식 양식어업	1. 가두리식	어류, 갑각류, 무족류, 해삼	30 이내	0.5 내지 10	0.5 내지 10	300 이상
	2. 외해(중층) 가두리식	어류	70 이내	1 내지 10	1 내지 10	500 이상
나. 축제식 양식어업	축제식	어류, 갑각류, 해삼	20 이내	0.5 내지 20	1 내지 20	-
다. 수하식 양식어업	연승식	우렁쟁이 · 미더덕 기타 유용수산동물	30 이내(부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 강원도 및 경상북도의 경우에는 70 이내, 제주도의 경우에는 40 이내)	1 내지 20	1 내지 20	100 이상
라. 바닥식 양식어업	1. 살포식	갯지렁이 기타 유용수산동물 성게 · 해삼 기타 유용수산동물	0	1 내지 100	1 내지 20	100 이상
	• 간석지					
	• 천 해	40 이내	1 내지 30	1 내지 20	100 이상	

4. 복합양식어업

양식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양 식 물	어장의 수심 (단위:미터)	어장구역의 한계 (단위:헥타르)		어장사이의 거리 (단위:미터)
				어 촌 계 (지구별조합)	어촌계(지구별조합) 외의 자	
가. 수하식 양식어업	1. 연승식	미역 · 다시마, 미역 · 톳, 다시마 · 톳, 미역 · 다시마 · 톳	30 이내	1 내지 20	1 내지 20	100 이상
		미역 · 우렁쟁이, 다시마 · 우렁쟁이, 다시마 · 전복, 톳 · 전복, 미역 · 전복, 미역 · 가리비, 다시마 · 가리비, 가리비 · 우렁쟁이, 전복 · 미역 · 다시마	30 이내(부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 강원도 및 경상북도의 경우에는 70 이내, 제주도의 경우에는 40 이내)	1 내지 20	1 내지 20	100 이상
	2. 건홍식 과 연승식	김 · 가리비	30 이내	1 내지 20	1 내지 20	200 이상

나. 바닥 식 양식어업	1. 살포식	해삼 · 성게	40 이내	1 내지 30	1 내지 20	100 이상
	2. 살포식 과 투석식	굴 · 바지락	0	1 내지 100	1 내지 20	100 이상
다. 축제식 양식어업	축제식	어류 · 해삼, 갑각류 · 해삼	20 이내	0.5 내지 20	1 내지 20	100 이상
라. 혼합 양식어업	1. 건홍식 과 살포식	김 · 바지락, 김 · 동죽, 김 · 개량조개, 파래 · 바지락	7 이내	1 내지 100	1 내지 20	200 이상
	2. 연승식 과 천해 투석식	툰 · 전복, 다시마 · 전복, 미역 · 전복	30 이내	1 내지 20	1 내지 20	200 이상
	3. 침하식 과 연승식	전복 · 미역, 전복 · 다시마, 전복 · 미역 · 다시마	30 이내	0.5 내지 10	0.5 내지 5	100 이상
	4. 가두리식 과 연승식	전복 · 미역, 전복 · 다시마, 전복 · 미역 · 다시마	30 이내	0.5 내지 10	0.5 내지 10	100 이상

5. 협동양식어업

양식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양식물, 어장구역의 한계와 어장사이의 거리는 해조류양식어업 · 패류양식어업 · 어류양식어업 및 복합양식어업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협동양식어업과 마을어업이 연접되어 있고 어업권자가 같을 경우에는 어장사이의 거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비고 : 시 · 도지사는 이미 면허를 받은 양식어장의 면허를 동시에 갱신하는 경우와 어장 정비실적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어업권의 어장면적과 동일한 어장면적의 범위 안에서 어장구역의 한계 또는 어장사이의 거리를 조정하여 정할 수 있다.

[별표 4] 삭제 <97·3·24>

[별표 5] <개정 99·3·18>

정치망어업의 보호구역(제12조관련)

보 호 구 역	보호구역 도해(예시)
<p>1. 어장의 바다쪽 중앙보호구역은 각각 어장길이의 연장선이내의 수면. 다만, 바다쪽 보호구역의 길이는 550미터를 초과하지 못한다.</p> <p>2. 어장의 좌·우측보호구역과 어장의 바다쪽 중앙보호구역의 좌·우측보호구역의 총길이는 어장너비의 8배이내로 하되, 2천600미터를 초과하지 못한다.</p>	<p>바다쪽 중앙보호구역</p> <p>바다쪽 좌측보호구역</p> <p>어장 좌측보호구역</p> <p>어장 우측보호구역</p> <p>어장</p> <p>550m 이내</p> <p>550m 이내</p> <p>길이</p> <p>길이</p> <p>너비</p> <p>너비</p> <p>너비의 4배이내</p> <p>너비의 4배이내</p> <p>육지</p> <p>※ 어장길이 : (가)기점에서 (나)기점 또는 (라)기점에서 (다)기점에 이르는 선</p> <p>※ 어장너비 : (가)기점에서 (라)기점 또는 (나)기점에서 (다)기점에 이르는 선</p>

[별표 6] <개정 2005.3.31>

양식어장의 시설기준(제15조제1항관련)

1. 해조류양식어업

양식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양 식 물	시 설 기 준	
			시 설 규 모	어장면적에대한시설비율 (단위: 퍼센트)
가. 수 하 식 양식어업	1. 건홍식 • 지주망홍	김, 파래, 매생이	100제곱미터당 1책 (2.2미터×40미터)	5 내지 18
	• 부류망홍	김, 파래, 매생이	100제곱미터당 1책 (2.2미터×40미터)	5 내지 18
	2. 연승식	미역·다시마·툇·파래·갈래곰보 기타 유용수산물	50제곱미터당 1줄 (100미터)	5 내지 10
나. 바닥 식 양식어업	투석식 • 천 해	돌김·우뭇가사리·꼬시래기 기타 유용수산물	1헥타르당 투석량 1천200개 이상(1개당 40킬로그램 이상)	90 이상

2. 패류양식어업

양식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양 식 물	시 설 기 준	
			시 설 규 모	어장면적에대한시설비율 (단위: 퍼센트)
가. 수 하 식 양식어업	1. 간이식	굴 기타 패류	18제곱미터당 1대(가로 6미터, 세로 3미터, 높이 2미터)	5 내지 10
	2. 연승식	굴	50제곱미터당 1줄(100미터). 1헥타르당 수하연은 7,000줄(남해군을 제외한 경상남도는 5,000줄)이하, 수하연 1줄의 길이는 5미터(조립전 수하연길이 6.5미터) 이하	5 내지 10
		전복·진주조개·홍합·가리비 기타 패류	50제곱미터당 1줄(100미터). 다만, 서해안, 강원도 및 경상북도에 있어서의 가리비의 경우에는 100제곱미터당 1줄(100미터)	5 내지 10
3. 뗏목식	굴·진주조개 기타 패류	165제곱미터당 1대(9미터×18미터)	3 내지 10	

나. 바닥식 양식어업	1. 살포식 • 간석지	백합 고막·바지락·가무락·동죽·개량조개 기타 패류	1헥타르당 종묘살포량 1톤 내지 3톤 1헥타르당 종묘살포량 2톤 내지 3톤	90 이상 90 이상
	• 천 해	피조개·새고막·홍합·가리비·키조개·전복 기타 패류	1헥타르당 종묘살포량 1톤 내지 1.5톤. 다만, 피조개는 20만마리 내지 50만마리, 가리비는 5만마리 내지 15만마리, 키조개는 3만마리 내지 10만마리, 새고막은 1톤 내지 3톤, 전복은 2만마리 이상	90 이상
	2. 투석식등 • 간석지	굴	1헥타르당 투석량 5천개 이상 (1개당 40킬로그램 이상) 또는 타이어 8천개 내지 1만개	90 이상
다. 가두리식 양식어업	• 천 해	전복·소라 기타 패류	1헥타르당 투석량 1천200개 이상 (1개당 40킬로그램이상) 및 종묘 2만마리 이상 살포	90 이상
	3. 침하식 • 천 해	전복	25제곱미터당 1개(가로 3미터 내지 5미터, 세로 3미터 내지 5미터, 높이 2.5미터 내지 5미터 이상) 및 1헥타르당 종묘 2만마리 이상	5 내지 10
가두리식 양식어업	가두리식	전복 기타패류	25제곱미터당 1대(그물길이 가로 5미터, 세로 5미터. 다만, 시설 방법 또는 양식물에 따라 그물의 길이 및 형태를 달리 할 수 있다)	5 내지 10

3. 어류등양식어업

양식어업의 종류	양식 방법	양 식 물	시 설 기 준	
			시 설 규 모	어장면적에 대한 시설 비율(단위 : 퍼센트)
가. 가두리식 양식어업	1. 가두리식	어류, 갑각류, 두족류, 해삼	25제곱미터당 1대(그물길이 가로 5미터, 세로 5미터. 다만, 시설 방법 또는 양식물에 따라 그물의 길이 및 형태를 달리 할 수 있다)	5 내지 20
	2. 외해(중층) 가두리식	어류	25제곱미터당 1대(그물길이 가로 5미터, 세로 5미터. 다만, 시설 방법 또는 양식물에 따라 그물의 길이 및 형태를 달리 할 수 있다)	5 내지 20
나. 축제식 양식어업	축제식	어류, 갑각류, 해삼	1헥타르당 종묘살포량 2만마리 이상	20 이상
다. 수하식 양식어업	연승식	우렁쟁이·미더덕 기타 유용수산물	50제곱미터당 1줄(100미터)	5 내지 10
라. 바닥식 양식어업	살포식 • 간석지	갯지렁이 기타 유용수산물	1헥타르당 종묘살포량 1톤 내지 1.5톤	90 이상
	• 천 해	성게·해삼 기타 유용수산물	1헥타르당 종묘살포량 1톤 내지 1.5톤	90 이상

4. 복합양식어업

양식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양식물	시설기준	
			시설규모	어장면적에대한시설비율(단위:퍼센트)
가. 수하식 양식어업	1. 연승식	미역·다시마, 미역·툇, 다시마·툇, 미역·다시마·툇, 미역·우렁쉥이, 다시마·우렁쉥이, 다시마·전복, 툇·전복, 미역·전복, 미역·가리비, 다시마·가리비, 가리비·우렁쉥이, 전복·미역·다시마	50제곱미터당 1줄(100미터)	5 내지 10
	2. 건홍식과 연승식	김·가리비	김:100제곱미터당 1책(2.2미터×40미터) 가리비:100제곱미터당 1줄(100미터)	5 내지 10 5 내지 10
나. 바닥식 양식어업	1. 살포식	해삼·성게	1헥타르당 종묘살포량 1톤 내지 1.5톤	90 이상
	2. 살포식과 투석식	굴·바지락	굴:1헥타르당 투석량 5천개 이상(1개당 40킬로그램 이상) 바지락:1헥타르당 2톤 내지 3톤	10 내지 25 80 이상
다. 축제식 양식어업	축제식	어류·해삼, 갑각류·해삼	1헥타르당 종묘살포량 2만마리 이상	20 이상
라. 혼합양식어업	1. 건홍식과 살포식	김·바지락, 김·동죽, 김·개량조개, 파래·바지락	김, 파래:100제곱미터당 1책(2.2미터×40미터) 바지락, 동죽, 개량조개:1헥타르당 종묘살포량 2톤 내지 3톤	10 내지 18 80 이상
	2. 연승식과 천해투석식	툇·전복, 다시마·전복, 미역·전복	툇, 다시마, 미역:50제곱미터당 1줄(100미터) 전복:1헥타르당 투석량 1천200개 이상(1개당 40킬로그램 이상) 및 종묘 2만마리 이상 살포	5 내지 10 80 이상
	3. 침하식과 연승식	전복·미역, 전복·다시마, 전복·미역·다시마	전복:25제곱미터당 1개(가로 3미터 내지 5미터, 세로 3미터 내지 5미터, 높이 2.5미터 내지 5미터 이상) 및 1헥타르당 종묘 2만마리 이상	5 내지 10
	4. 기둥리식과 연승식	전복·미역, 전복·다시마, 전복·미역·다시마	전복:25제곱미터당 1대(그물 길이 가로 5미터, 세로 5미터. 다만, 시설방법 또는 양식물에 따라 그물의 길이 및 형태를 달리할 수 있다) 미역, 다시마, 미역·다시마:50제곱미터당 1줄(100미터)	5 내지 10 5 내지 10

5. 협동양식어업

해조류양식어업·패류양식어업·어류등양식어업 및 복합양식어업의 양식어장시설기준에 의한다.

비고: 시·도지사는 지역여건 및 병충해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양식물별 시설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별표 7] <개정 2004·1·31>

마을어장안의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방법(제16조관련)

지 역 별	포 획 · 채 취 방 법
부산광역시·인천광역시·울산광역시·경기도·충청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남도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양식장형망선,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얻은 형망어업, 잠수기어업이 허가된 어선 또는 나잠. 다만, 양식장형망선, 형망어업이 허가된 어선은 전북·소라·키조개 및 고등류외의 패류를 포획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강원도·경상북도·제주도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양식장형망선·자원관리채취선,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얻은 형망어업, 잠수기어업이 허가된 어선 또는 나잠. 다만, 강원도·경상북도의 양식장형망선, 제주도의 양식장형망선·형망어업이 허가된 어선은 전북·소라·키조개 및 고등류외의 패류를 포획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별표 8] <개정 99·3·18>

어업의 종류별 관리선의 규모(제27조제4항관련)

어업의 종류	관 리 선 의 규 모
정치망어장·양식어장	총톤수 30톤 미만
마을어장	총톤수 20톤 미만
법률 제4252호, 수산업법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제2종 공동어장 및 제3종 공동어장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종류와 어업의 명칭별 어선의 규모범위내

[별표 9] 삭제 <99·3·18>

어장이용개발계획서(제 2 조 제 4 항관련)

(단위 : 건, ha)

① 총 개발적지면적	기개발어장			⑤ 미개발적지면적	⑥ ()년 ()개발계획						신청수역의 개발상 제약사항					⑰ 개발하고자 하는 사유	
	② 어업별	③ 건수	④ 면적		⑦ 어업별			⑧ 수면의 위치	⑨ 수면의 번호	⑩ 건수	⑪ 면적	⑫ 국가공의면	⑬ 자원보호면	⑭ 어업조정면	⑮ 수산물법규면		⑯ 기타
					종류	어업의 방법	품종										

48277-02611일

369mm×268mm

91. 3. 27승인

(신문용지 54g/m²)

* 기재요령

- ①의 난에는 관할 시·군·구관내 총 개발적지 면적을 기재한다.
- ②~④란에는 기 개발한 어업의 종류(정치망어업·해조류양식어업·패류양식어업·어류등양식어업·복합양식어업·협동양식어업 및 마을어업)와 건수, 면적을 기재한다.
- ⑤의 난에는 관할 시·군·구별 총 미개발적지 면적을 기재한다.
- ⑥의 난에는 앞 ()에는 개발연도를, 뒷 ()에는 정기, 변경이라 기재한다.
- ⑦의 난에 어업의 방법란에는 양식어장은 양식방법을, 마을어장은 포획·채취수단을 기재한다.
- ⑧의 난에는 개발계획수면의 위치(행정구역상, 읍·면·동·리·번지명)를 기재한다.
- ⑨의 난에는 개발계획수면의 번호를 차례로 부여하여 기재한다.
- ⑩의 난에 개발건수는 각 1건씩으로 하고 ⑪의 난에는 이에 대한 면적을 기재한다.
- ⑫의 난에는 법 제 4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장의 협의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법규의 관련여부를 검토후 해당사항을 기재한다.
- ⑬의 난에는 보호수면, 수산자원보전지구, 소상어류보호수면등 기타 수산자원 보호상 관련되는 사항을 기재한다.
- ⑭의 난에는 보호구역저축, 어장과밀, 어도차단, 어장구역중복, 인근어장과의 분쟁예상등 기타 어업조정상 관련되는 사항을 기재한다.
- ⑮의 난에는 낙도, 무인도, 어장기점설치가능여부, 육지와와의 거리, 수심, 인근어장과의 거리, 마을어장안 기타 수산에 관한 법령 및 정부시책등과의 관련여부를 기재한다.
- ⑯의 난에는 기타 신청수역 개발상 제약사항을 기재한다.
- ⑰의 난에는 신청수역을 개발하고자 하는 구체적 사유를 기재한다.
- ⑫~⑯의 난에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없음"이라 기재한다.

[별지 제 2 호서식] <개정 97·3·24>

어장이용개발계획승인(협의)요청내역서(제2조제5항관련)

승인(협의) 근거법령	()제 조제 항제 호에 의한 승인(협의)			
수면위치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승인 또는 협 의 어업	어업의종류		양식방법	
	시설방법		면적	(ha)
승인(협의) 를 요하는 사유	지정항안		항로상	
	어항안		군사상	
	개항안		공원안	
	특정지역안		기타	
승인(협의) 신청사유에 대한 지장 유무				
기타 참고사항				

48277-04611일

91.3.27 승인

190mm×268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 3 호서식] <개정 2005·3·31>

공동신청사항(대표자의 <input type="checkbox"/> 선정· <input type="checkbox"/> 변경, <input type="checkbox"/> 지분변경)신고서 (제3조관련)				처리기한 즉시
신고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④어업의종류			⑤신청면적	ha
⑥양식방법· 양식시설량			⑦포획물·채취 물 또는 양식물	
⑧면허신청연월일		년	월	일
공동신청자의 대표자의 선정 또는 변경사항		⑨변경전대표자	⑩선정 또는 변경후대표자	
공동신청자의 공유자지분 변경사항	⑪성명	⑫변경전지분	⑬변경후지분	

「수산업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면허 공동신청자의 대표자의 선정·변경 또는 지분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대표자의 자격 및 그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대표자를 선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한한다) 1부	조례에 의함
2. 신청인의 지분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지분을 변경한 경우에 한한다) 1부	

48277-17811민
91.3.27 승인

190mm×268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 4 호서식] <개정 2001·3·10>

(앞 면)

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서				처리기간
				시·군·구 21일
신청인	①성 명		②국 적	
	③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④주 소			
배우자 및 직계 비속	⑤성 명		⑥주민등록번호	-
	⑤성 명		⑥주민등록번호	-
	⑤성 명		⑥주민등록번호	-
	⑤성 명		⑥주민등록번호	-
개발 계획 내용	⑦어업의 종류		⑧양식방법	
	⑨포획·채취물 또는 양식물			
	⑩수면의 번호	제 호	⑪수면의 면적	ha
	⑫수면의 위치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인접		

「수산업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면허의 우선순위자로 결정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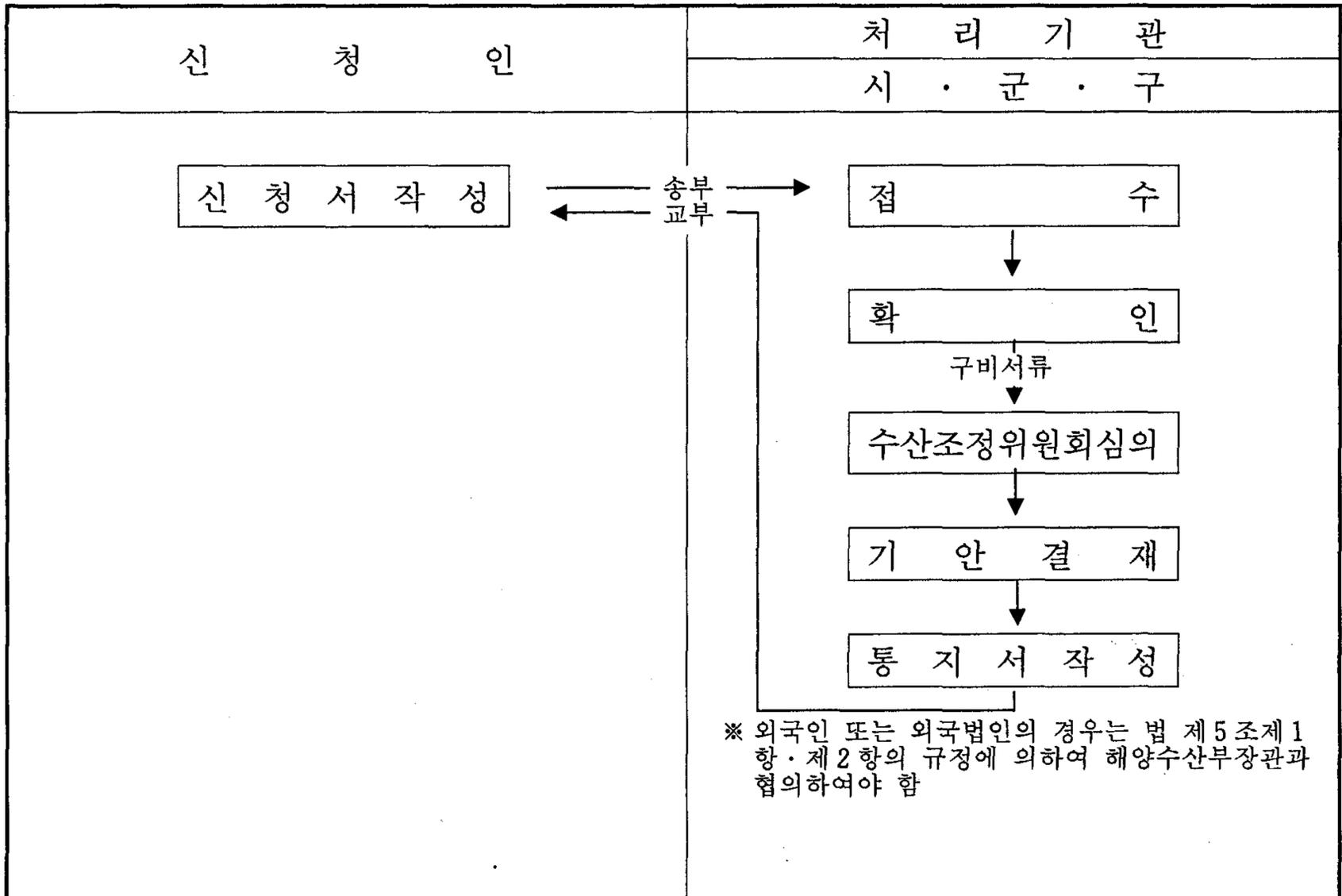
1. 수산기술자의 자격 또는 경력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수산기술자에 한한다) 1부
2. 신청일 현재 취득하고 있는 어업면허증 및 어업허가증 사본(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한다) 각 1부
3. 어업에 종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어업에 종사한 자에 한한다) 1부
4. 포기하고자 하는 어업권의 면허증 사본(법 제13조제 4 항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1부
5. 여권 사본(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1부

48277-17911민
91.3.27 승인

190mm×268mm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어업면허우선순위의 결정을

1. 개발계획의 내용

①어업의 종류		②시 설 방 법		③포획·채취물, 양식물		④수면의 번호	
---------	--	----------	--	--------------	--	---------	--

2. 심의근거 및 내용

우선 순위	⑦법 제9조 각항 각호의 해당 여부			⑧법 제10조 각호 해당여부						⑨ 법 제11조 제 2 항에 해당 되지 아니함	⑩제 1 항제 1 호 해당				⑪제 1 항제 2 호 해당					
	제 3 항		제 4 항 해당자	제1호의	제3호의	제4호의	제5호의	제6호의	제7호의		수산기술 자로서면 허어업의	신청일이 전5년간면 허어업의	수산기술 자로서허 가어업의	신청일이 전5년간허 가어업의	경 영 자	종 사 자	경 영 자	종 사 자	경 영 자	종 사 자
	제1호에 해당됨	제2호에 해당됨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함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함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함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함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함												
신청자																				

3. 심의의견, 조정의견 및 사유

수 산 조 정 위 원 회 의 심 의 의 견	
시 장 · 군 수 · 구 청 장 의 조 정 사 유 및 결 정 의 견	

48277-18011일
99.6.12 개정승인

위한 심의자료표(제4조제2관련)

⑤수면의 면적	⑥수면의 위치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인접
---------	---------	-------	-------	-----	-------

법 제13조 각항 각호의 해당여부																		시군구 수산조 정위원 회의심 의결과 면허의 우선순 위	시장군 수구청 장의조 정및결 정결과 우선순 위	
⑫ 제 2 항 제 1 호 의 해당자	⑬ 제 2 항제 2 호				⑭ 제 3 항해당		⑮ 제 4 항 해당 자	⑯제 5 항					⑰제 6 항			⑱제 7 항				
	수산물 수확기 신청 어업의	신청일 이전5년 간신청 어업의	제1호 해당 자	제2호 해당 자	법 제9조 제1항의	어촌 계		지구 별 조합	법 제9조 제3항의	어촌 계	영어 조합 법인	지구 별 조합	법 제9조 제2항의	어촌 계	영어 조합 법인	지구 별 조합	제1호 해당자			제2호 해당자

※ 심의요령

- 1) ⑦ 내지 ⑱의 각 난에는 신청자의 신청사항이 해당될 때에는 ○표, 해당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표를 한다.
- 2) ⑪의 난의 허가어업에는 근해어업과 원양어업은 제외한다.
- 3) ⑧ 및 ⑨의 난에 ×표가 있는 자는 ⑩의 난 이하의 난에 ○표가 있어도 면허의 순위 결정에서 제외한다.
- 4) 우선순위는 ⑩ 내지 ⑱의 난에 대하여 법 제13조에 의하여 심의한다.

520mm×268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 6 호서식] <개정 2001. 3. 10>

면허의 우선순위 결정 통지서			
신청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 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개발 계획의 내용	④어업의 종류		⑤양식방법
	⑥포획·채취물 또는 양식물		
	⑦수면의 번호		⑧수면의 면적 ha
	⑨수면의 위치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인접	
⑩면허신청순위		⑪면허신청기간 . . . ~ . . . 까지	
<p>「수산업법 시행령」 제6조제3항과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면허우선순위를 신청한 수면에 대한 면허의 순위를 통지합니다. 다만, 면허신청기간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어업면허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신청기간의 만료일까지 1회에 한하여 30일간의 면허신청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시장·군수·구청장 인</p>			

48277-18111일

190mm×268mm

91. 3. 27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 7 호서식] <개정 2005. 3. 31>

(앞 면)

면허신청기간의 연장신청서(제4조제4항관련)			처리기간
			시·군·구 1일
신청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 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개발 계획의 내용	④기업의 종류		⑤양식방법
	⑥포획·채취물 또는 양식물		
	⑦수면의 번호		⑧수면의 면적 ha
	⑨수면의 위치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인접	
⑩면허의 신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⑪연장하고자 하는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⑫연장신청사유			
<p>「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 4 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면허신청기간을 연장허가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시장·군수·구청장 귀하</p>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조례에 의함

48277-18211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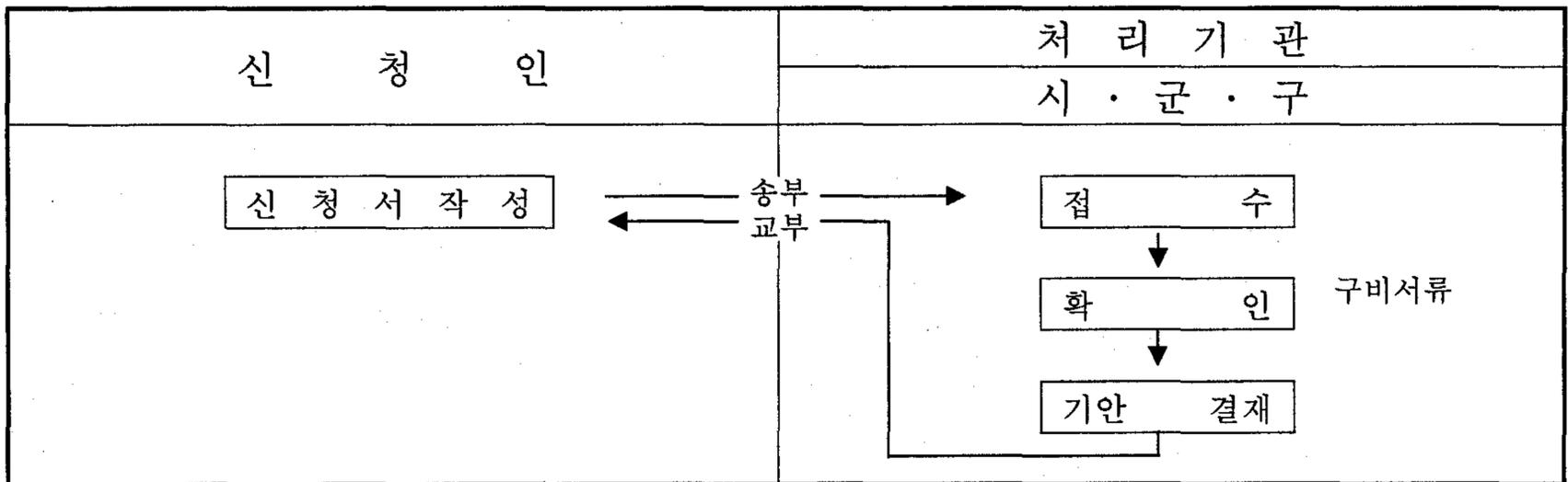
190mm×268mm

91. 3. 27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별지 제 7 호의 2 서식] <개정 2001. 3. 10>

외국인에 대한 어업면허에 관한 협의요청서				
신청인	①성명			②국적
	③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④주소			
개발 계획 내용	⑤어업의 종류			⑥양식방법
	⑦포획물 또는 양식물			
	⑧수면의 번호	제 호	⑨수면의 면적	ha
	⑩수면의 위치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인접		
⑪면허신청순위				
<p>「수산업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어업면허를 하고자 협의를 요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시장·군수·구청장 인</p> <p>해양수산부장관 귀하</p>				
<p>구비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협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수면의 위치와 축척 5만분의 1이상의 구역도 1부 2. 시·도 및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 심의서 사본 각 1부 3. 당해 어업면허 우선순위의 결정을 위한 별지 제 5 호서식의 심의자료표 사본 1부 4. 해당어업면허처분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의 종합의견서 각 1부 				

48277-32811일

97. 2. 14 승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어업면허신청서(제5조제5항관련)					처리기간 시·군·구 7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공신의 신청 유인분	④성명					
	⑤주민 등록 번호	-	-	-	-	-
	⑥지분					
⑦어업의 종류		⑧수면의번호		⑨신청면적		ha
⑩양식방법· 양식시설량				⑪포획물·채취 물 또는 양식물		
⑫면허를 받고자 하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인접 (별지도면과 같음)				
지정을 받고자 하거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어선	⑬어선명	⑭어선번호		⑮톤수	⑯기관의 마력	
⑰어업의 시기		. . . 부터 . . . 까지 (월)				
⑱면허를 받고자 하는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수산업법」 제8조제1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 5조제1항의 규정에 어업의 면허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수수료 조례에 의함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48277-18311민

190mm×268mm

91. 3. 27 승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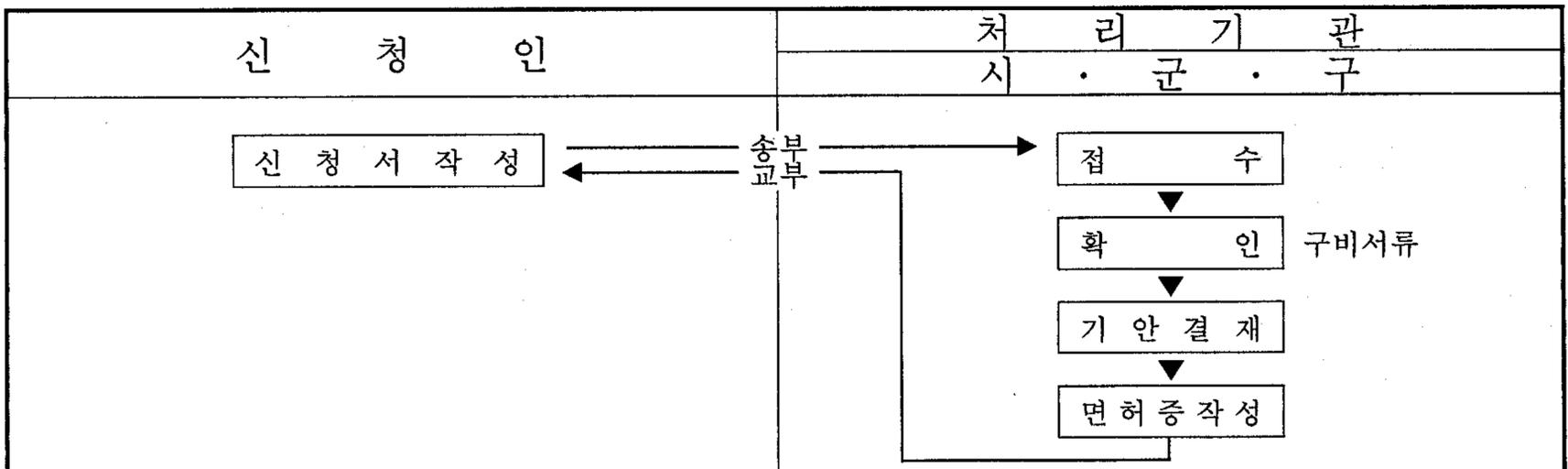
(신문용지 54g/㎡)

구비서류

(뒷 면)

1. 면허를 받고자 하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부
2. 면허를 받고자 하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의 동의서. 다만, 현재의 어업권자보다 먼저 면허를 받았던 자가 동일한 어장에서 동종어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 그 어업권자의 동의서를 얻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서 1부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 9 호서식] <개정 97·3·24>

어업면허증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1. 면허번호() 어업면허 제 호
 2. 어업의 종류
 3. 어업의 방법 및 양식시설량
 4. 어장의 위치와 구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인접
(별지 도면과 같음)
 5. 어장면적
 6. 포획·채취물, 양식물의 종류
 7. 포획·채취방법
 8. 어업의 시기 월 일부터 월 일까지(개월)
 9. 면허의 유효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10. 제한 또는 조건
 11. 등록일자 년 월 일

「수산업법」 제 8 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어업을 면허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 인

48277-18411일

91.3.27 승인

190mm×268mm

(백상지 180g/m²)

[별지 제10호서식] 내지 [별지 제12호서식] 삭제 <97·3·24>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05·3·31>

정치망어업의 가두리시설통지서	
어업권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④면허번호	()제 호
⑤면허의 유효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⑥어장의 면적	ha ⑦가두리시설면적 m ²
⑧어장의 위치 및 구역 도와 승인을 받고자 하는 수면의 구역도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별지 도면과 같음)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01. 3. 10>

가 두 리 시 설 설 치 증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1. 정치망어업의 면허번호 ()어업 제 호

2. 가두리시설의 설치증번호 제 호

3. 가두리시설의 위치와 구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별지도면과 같음)

4. 가두리시설의 규모 가로 m×세로 m×깊이 m(m²)

5. 가두리설치 유효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6. 제한 또는 조건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두리시설의 설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

48277-18811일

91. 3. 27 승인

190mm×268mm

(인쇄용지(특급) 60g/m²)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05. 3. 31>

(앞 면)

종묘살포신고서(제15조제2항관련)

처리기간

시·군·구 2일

신 고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어 업 권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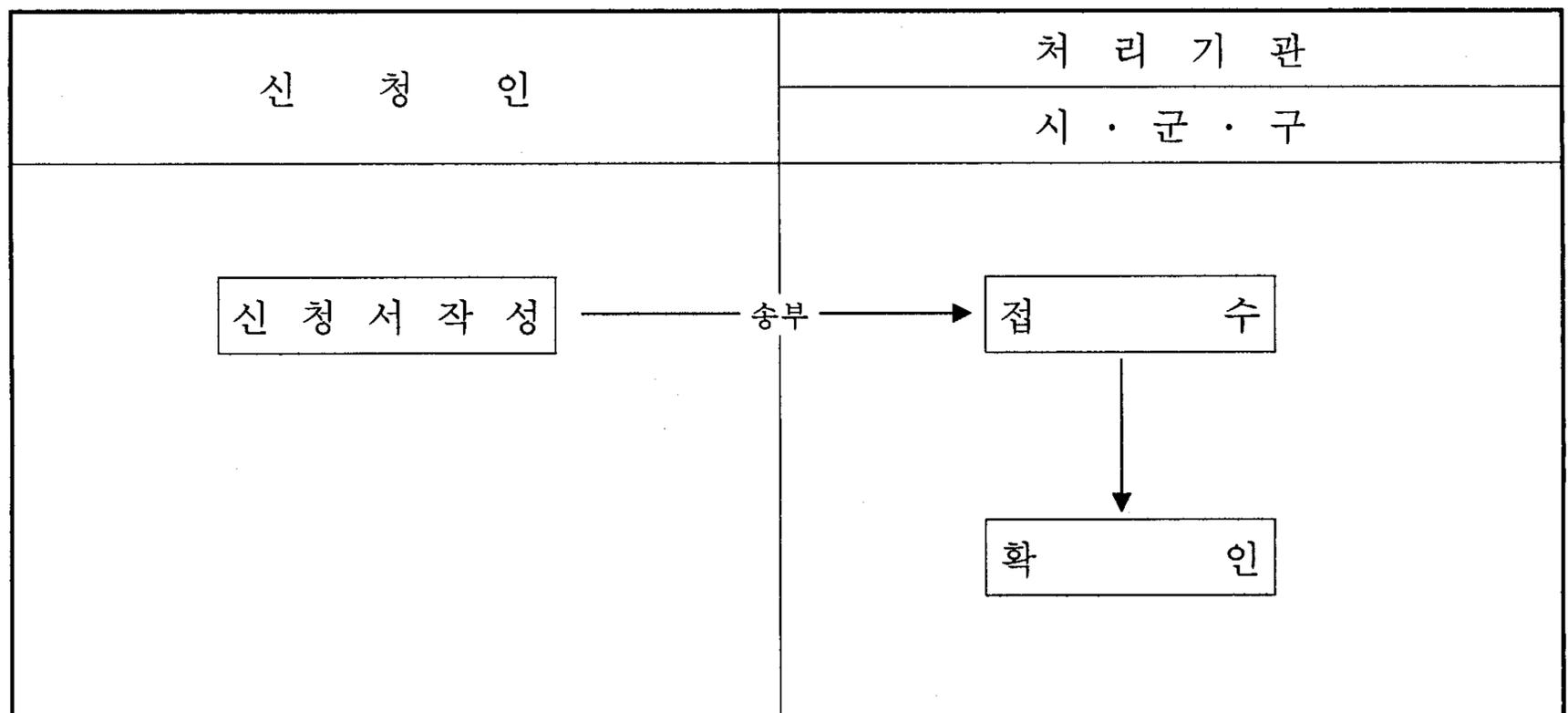
어업의 종류	()어업	시설방법 또는 양식방법	
면허번호	제 호	면허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종묘살포	장소(지점)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날 짜 (시간을 기재한다)	
	품종명		
	수량(kg)		
기타사항			
<p>「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장안에 종묘를 위와 같이 살포하고자 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고인 (서명 또는 인)</p> <p>시장·군수·구청장 귀하</p>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조례에 의함

48277-04211민
91.3.27 승인

190mm×268mm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금지해제허가신청서						처리기간 시·군·구 2일	
어업의종류							
어업성명		주민등록번호					
어업권자주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면허번호		제 호		면허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면허면적		ha		어장위치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사용하고자 하는 관리선의 내용		구분		지정받은 관리선		승인받은 관리선	
		종류		제 호		제 호	
		어 선 번 호		제 호		제 호	
		톤 수		제 호		제 호	
마 력		제 호		제 호		제 호	
포획·채취의 목적과 사유							
사용하고자 하는 어구 및 포획·채취방법							
포획·채취하고자 하는 수산물의 종류 및 수량		품 종		계		기 타	
		수량(kg)					
포획·채취금지해제허가신청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p>「수산자원보호령」 제15조제5항제1호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획·채취의 금지해제 허가를 받고자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시장·군수·구청장 귀하</p>							
※ 마을어업권자가 마을어장에 대하여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어업권행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마을어업권자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조례에 의함	

48277-26011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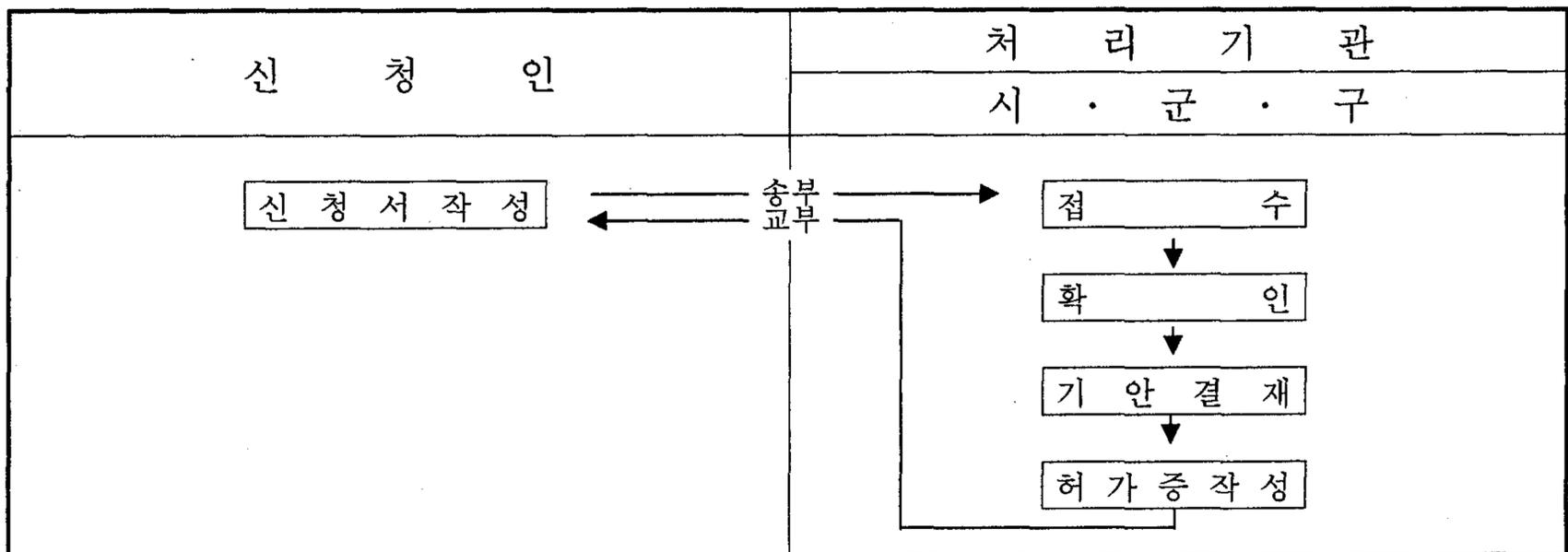
93.12.13 승인

210mm×297mm

(인쇄용지(2급) 60g/m²)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수산동물의 포획·채취금지해제허가증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1. 어업의 종류

2. 면허번호 (제 호) 면허면적 (ha)

3. 어장의 위치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4. 포획·채취금지해제 허가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5. 사용할 수 있는 관리선

구분 종류	지정받은 어선		승인받은 어선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어 선 번 호				
톤 수(톤)				
마 력(마력)				

6. 포획·채취할 수 있는 수산동물의 종류 및 수량

품 종	계					기 타
수 량(kg)						

「수산자원보호령」 제15조제5항제1호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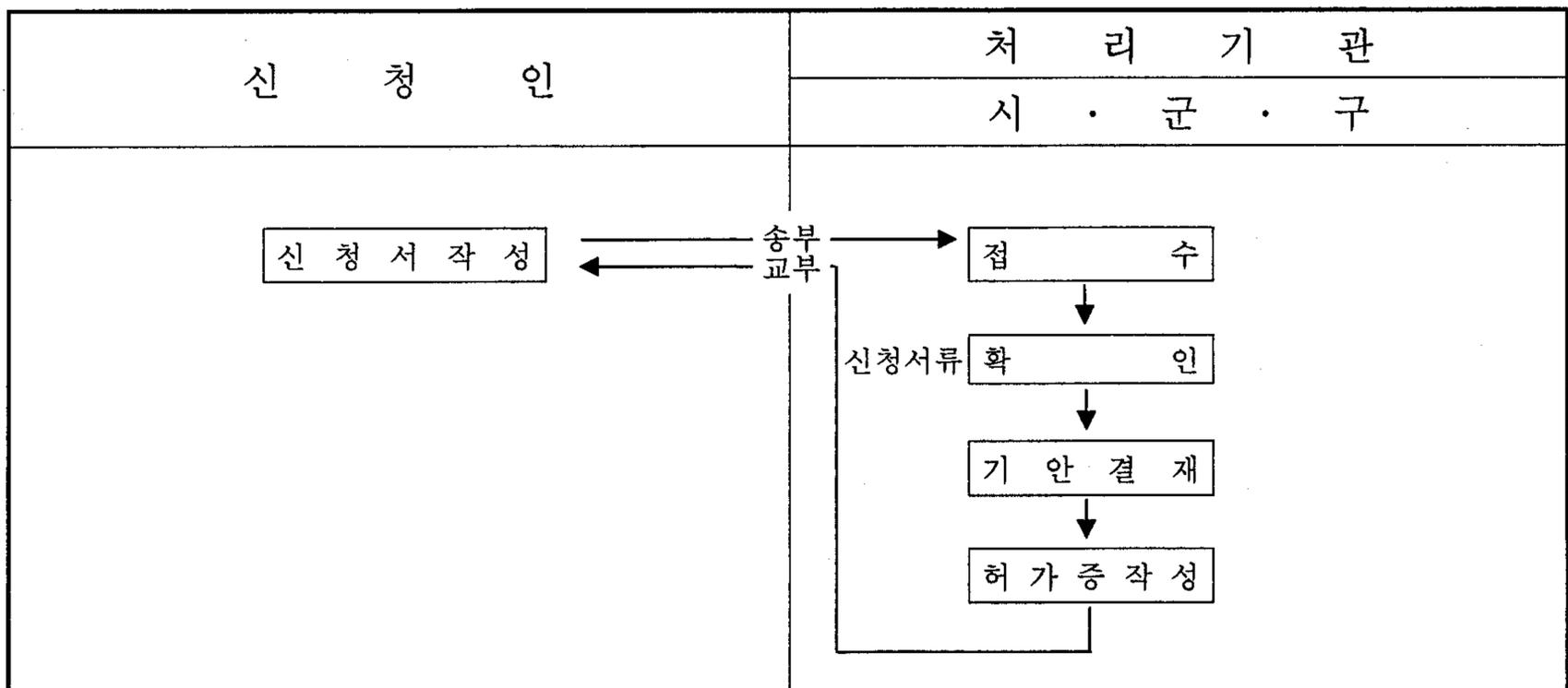
어업면허유효기간연장허가신청서(제21조제2항관련)				처리기간	
				시·군·구 2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④어업의종류			⑤양식방법		
⑥면허번호		제 호	⑦포획·채취물, 양식물		
⑧면허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⑨허가를받고자하는기간		. . .부터 . . .까지(년)			
<p>「수산업법」 제14조제2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면허유효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시장·군수·구청장 귀하</p>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조례에 의함

48277-18911민
91. 3. 27 승인

190mm×268mm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97.3.24>

어업면허유효기간연장승인(협의)요청내역서(제21조제3항관련)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성별	직업	
	주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승인(협의)신청내용		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의한 승인(협의)					
신청수면(어장)위치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인접(별첨도면)					
신청어업의 종류		양식 방법	시설 방법	면적		(ha)	
승인(협의)을 요청하는 사유	지정항안	항로상					
	어항안	군항안					
	개항안	공원안					
	특정지역안	군사관계지역					
승인(협의)신청사유 대지유무	항만건설상장지						
	국토건설상장지						
	항로상장지						
	기타공익상장지						
인접어업 및 타어업 과의 관계	인접어업인과의 이해관계						
	타어업자와 의 이해관계						
어장연혁	과거신청어장	과거타인어장	신규개발어장	과거공동어장			
어장가치 (생산성)	채포물 또는 양식장	종	다	나	쁘	다	모 르 겠 다
기타참고사항							
승인(협의)처리에 대한 의견 및 참고사항							

48277-03711일

91.3.27 승인

268mm×380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01. 3. 10>

어업면허유효기간연장허가증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 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④어업의 종류		⑤양 식 방 법	
⑥면 허 번 호	제 호	⑦포획·채취물, 양식물	
⑧면 허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		
⑨연장허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		
⑩등 록 일 자	년 월 일	⑪허가번호	제 호
<p>「수산업법」 제14조제2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권의 유효기간을 연장 허가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시장·군수·구청장 인</p>			

48277-19011일
91. 3. 27 승인

190mm×268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05. 3. 31>

(앞 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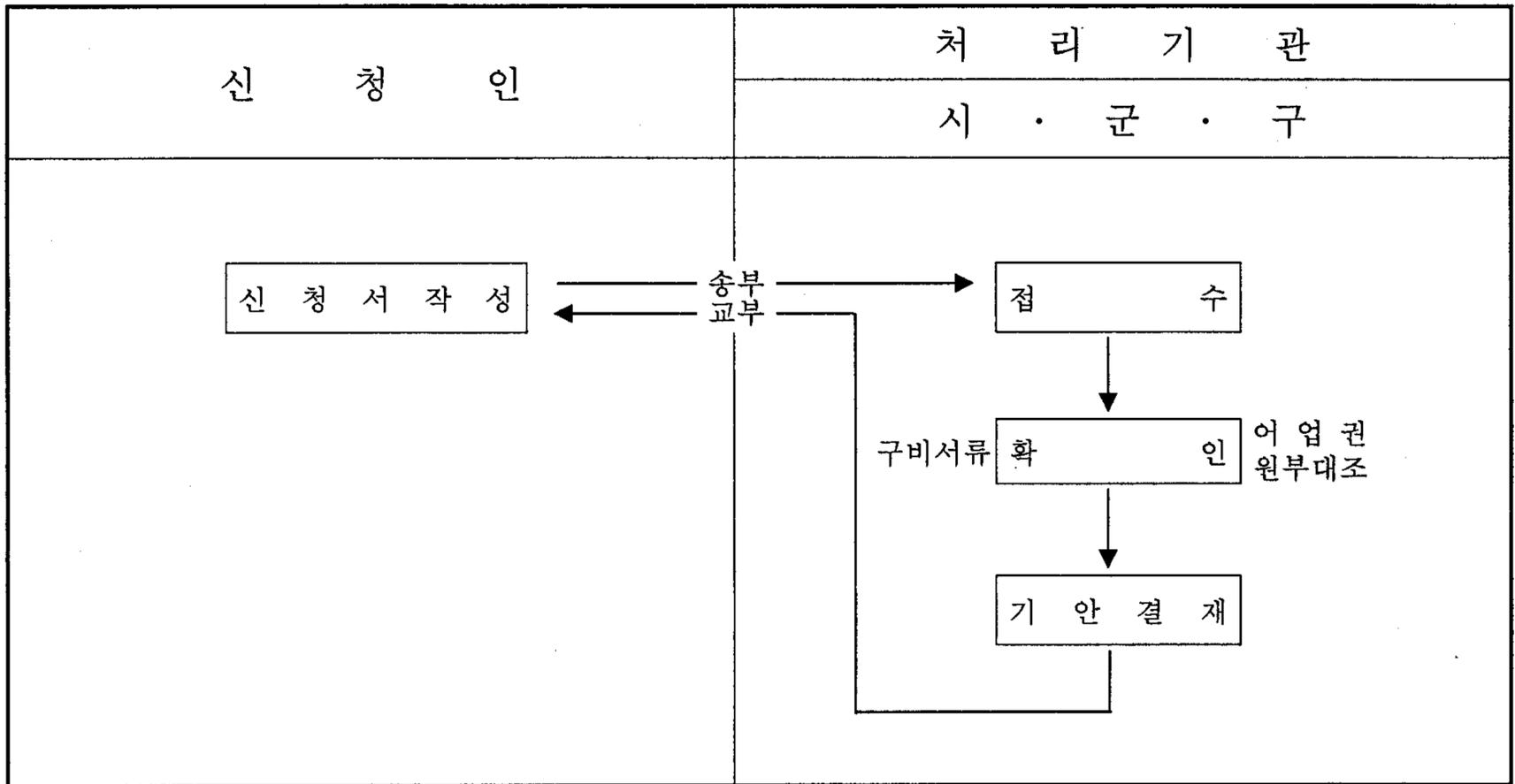
어업권포기신고서 (제21조제6항 및 제34조제1항관련)				처리기간
				즉 시
신고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 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④어업의 종류		⑤면 허 번 호	어업면허 제 호	
⑥포 기 일 자	년 월 일			
⑦포 기 의 사 유				
<p>「수산업법」 제30조제5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제6항 및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권을 포기하고자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어업권자 (서명 또는 인)</p> <p>시장·군수·구청장 귀하</p>				
<p>구비서류</p> <p>1. 당해 어업권에 관하여 등록된 권리자가 있을 때에는 그 권리자의 동의서 1부</p> <p>2. 어업면허증 1부</p>				<p>수수료</p> <p style="border: 1px solid black; display: inline-block; padding: 2px;">조례에 의함</p>

48277-19111민
91. 3. 27 승인

190mm×268mm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05.3.31>

(앞 면)

<input type="checkbox"/> 어업권 <input type="checkbox"/> 지 분		이전인가신청서(제22조제1항관련)		처리기간
				시·군·구 4일
신 고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 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④어업의종류			⑤양식방법	
⑥면허번호			⑦포획·채취물, 양식물	
이전 하는 자	⑧성 명		⑨주민등록번호	-
	⑩주 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이전 받는 자	⑪성 명		⑫주민등록번호	-
	⑬주 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⑭이전하고자 하는 지분			⑮이전의 사유	

「수산업법」 제18조제1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권(지분)의 이전인가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어업권자 (서명 또는 인)
어업권을 이전받을 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어업권자의 인감증명서 1부
2. 당해 어업권에 관하여 등록된 권리자의 동의서 1부

수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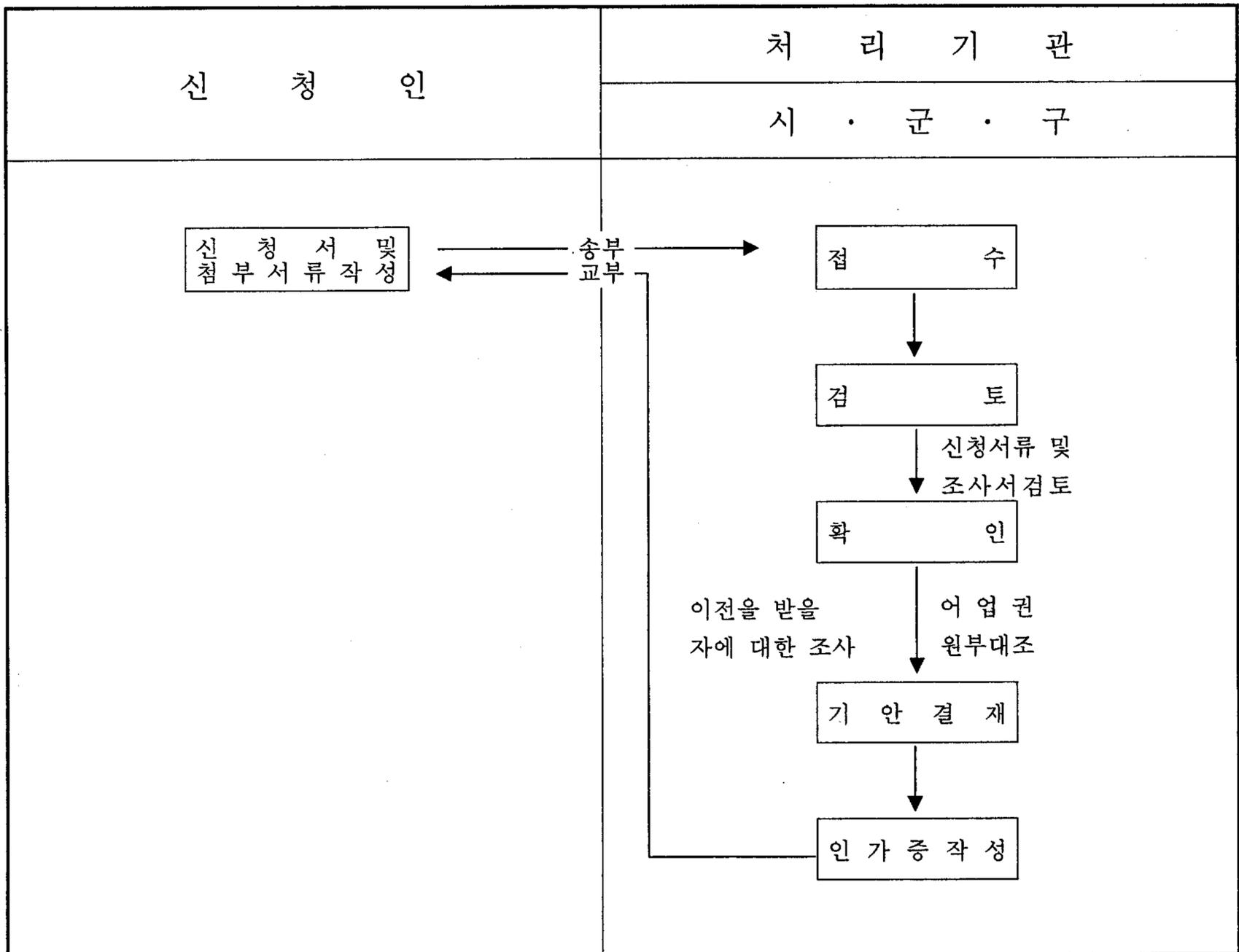
조례에 의함

48277-19211민
91.3.27 승인

190mm×268mm
(신문용지 54g/m²)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97·3·24>

어업권(지분)이전인가신청에 대한 조사서(제22조제2항관련)

이전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조사	성명	주민등록번호	-	성별	직업	겸업또는부업	
	주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어장위치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어장의종류	양식방법		어업시기			
	포획, 채취 방법	포획·채취물, 양식물		이전하고자 하는 지분			
	면허번호	면허일	년 월 일	면허료	허일	년 월 일	면허적면적 ha
	이전사유						
이전인가신청에 대한 조사	이전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의 유무						
	이전하고자 하는 자 및 이전을 받은 자의 인감증명 유무						
	이전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류의 타당성						
	대리인에 의한 신청일 경우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의 유무						
	기타 이전인가에 필요한 서류						
이전을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조사	성명	주민등록번호	-	성별	직업	겸업또는부업	
	주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어촌계가입여부	<input type="checkbox"/> 가입 <input type="checkbox"/> 미가입		가입일자			
	재산정도	부동산	천원	동산	천원	계 천원	
	신용정도				경영능력		
	수산법규위반여부						
조사자의견							
종합평가							
조사일: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소속			
		직급		직급			
		성명		성명	①	①	

48277-03911일
91.3.27 승인

268mm×380mm
(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01. 3. 10>

어업권(지분)이전인가증			
이 전 하는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이전을 받은자	④성 명		⑥주민등록번호
	⑤주 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⑦허 가 번 호		제 - 호	⑧이전받은지분
⑨어 업 의 종 류		⑩양 식 방 법	
⑪면 허 번 호		⑫포획·채취물, 양식물	
⑬이 전 의 사 유			
「수산업법」 제18조제1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권의 이전을 인가함			
시장·군수·구청장 인			

48277-19311일
91. 3. 27 승인

190mm×268mm
(인쇄용지(특급) 60g/㎡)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05. 3. 31>

(앞 면)

어업권분할인가신청서(제23조제1항관련)				처리기간	
				시·군·구 3일	
신 청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 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④어 업 의 종 류		⑤양 식 방 법			
⑥면 허 번 호		제 호	⑦포획·채취물, 양식물		
⑧어업권을 분할하기 전의 어업권의 어장면적				ha	
어 업 권 을 분 할 받 을 자	⑨성 명		⑩주민등록번호	-	⑪ 어 장 면 적
	⑫주 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⑬성 명		⑭주민등록번호	-	⑮ 어 장 면 적
	⑯주 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⑰성 명		⑱주민등록번호	-	⑲ 어 장 면 적
	⑳주 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01. 3. 10>

어업권분할(변경)인가증			
분할(변경)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받은자	③주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④어업의종류		⑤양식방법 및 양식시설량	
⑥어업면허번호		⑦포획물, 양식물	
⑧분할(변경)허가번호	제 - 호	⑨분할어장면적	ha
변경대상	변경내용		
⑩양식방법 및 양식시설량			
⑪양식물의종류			
⑫포획물			
⑬양식어업의종류			
⑭어업의시기			
⑮분할된수면의위치와구역도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인접 (별지 도면과 같음)		
「수산업법」 제18조제1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제3항 또는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권의 분할(변경)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			

48277-19511일

190mm×268mm

91. 3. 27 승인

(인쇄용지(특급) 60g/㎡)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05. 3. 31>

(앞면)

어업권변경인가신청서				처리기간
				시·군·구 1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④어업의종류		⑤양식방법 및 양식시설량		
⑥면허번호		⑦포획물, 양식물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⑧양식방법 및 양식시설량				
⑨양식물의종류				
⑩포획물				
⑪양식어업의종류				
⑫어업의시기				
⑬변경사유				

「수산업법」 제18조제1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권의 변경인가를 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어업면허증
2. 당해 어업권에 관하여 등록된 권리자의 동의서 1부
3. 어장구역과 어장구역, 어장구역과 보호구역이 서로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의 동의서 1부

수수료

조례에 의함

48277-19611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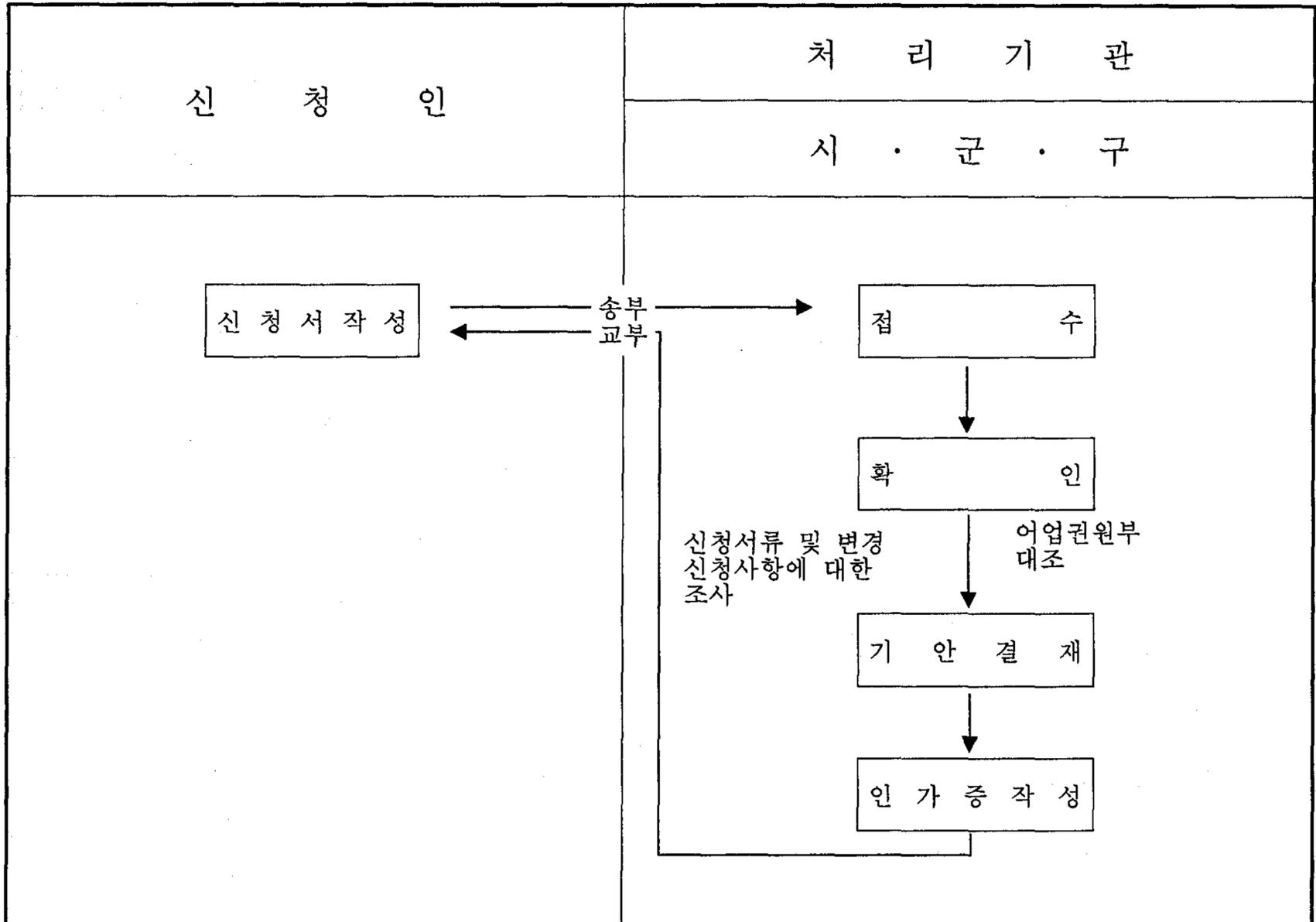
91. 3. 27 승인

190mm×268mm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별지 제27호의2서식] 삭제 <99·3·18>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05·3·31>

(앞 면)

어업면허증, 관리선지정(어선사용승인)증 재교부신청서 (제25조제2항 및 제26조제9항관련)		처리기간 시·군·구 1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④어업의 종류		⑤면허번호 어업면허 제 호
⑥분실(훼손) 연월일 및 장 소		년 월 일 (장소:)
⑦분실의 사유		
<p>「수산업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제3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제2항 및 제26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면허증, 관리선지정(어선사용승인)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시장·군수·구청장 귀하</p>		
구비서류 어업면허증 또는 관리선지정(어선사용승인)증(훼손된 경우에 한함) 1부		수수료 조례에 의함

48277-19711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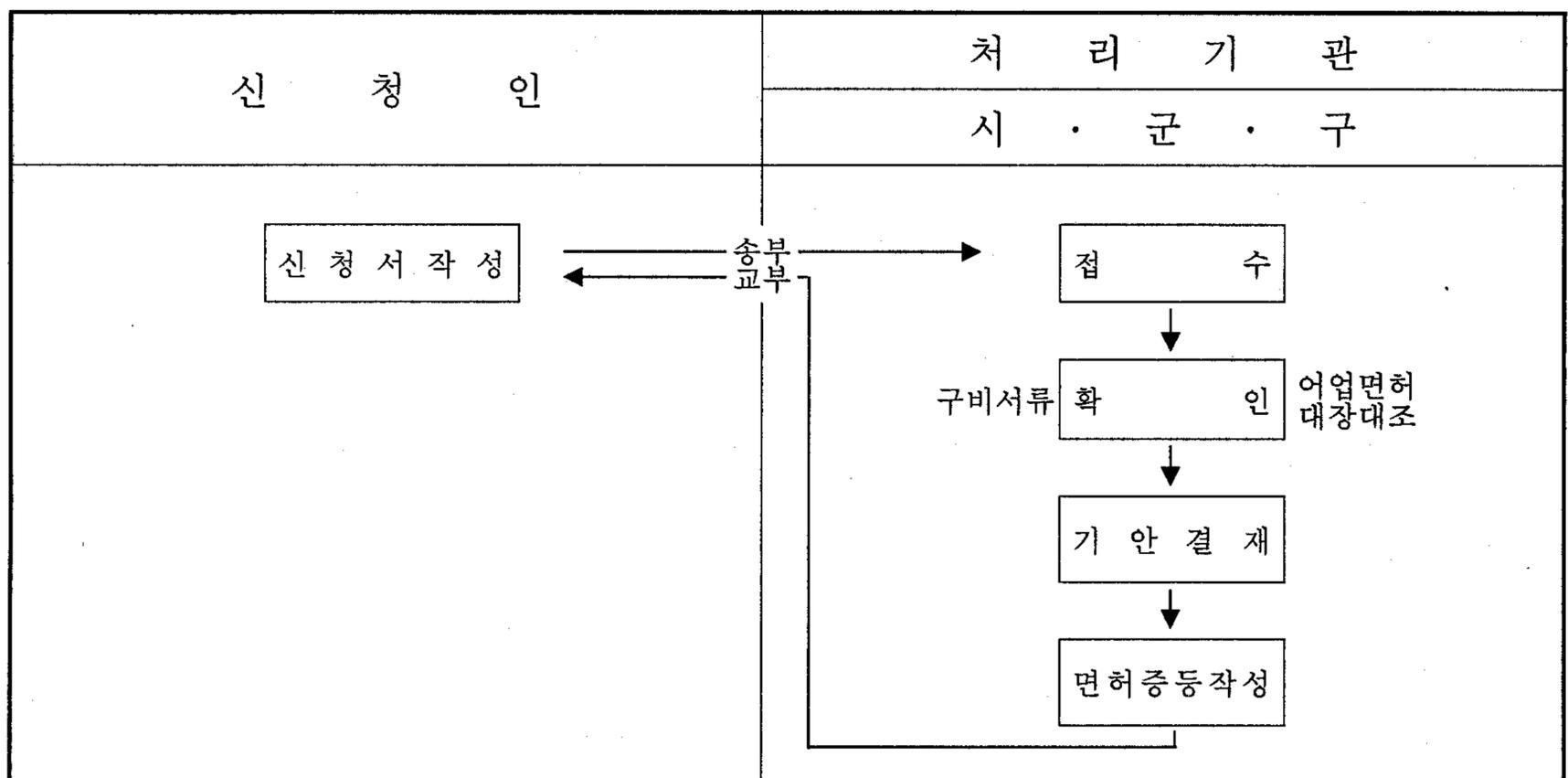
91.3.27 승인

190mm×268mm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별지 제28호의2서식] 결번

[별지 제28호의3서식] <개정 2005. 3. 31>

(앞 면)

관리선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사항 변경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④지정(승인)번호			
⑤변경하고자 하는 사항		지정(승인)사항	변경사항
⑥변경의 사유			
<p>「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선 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시장·군수·구청장 귀하</p>			
구비서류			수수료
1. 관리선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증			조례에 의함
2. 어선검사증서 사본 1부			

48277-33011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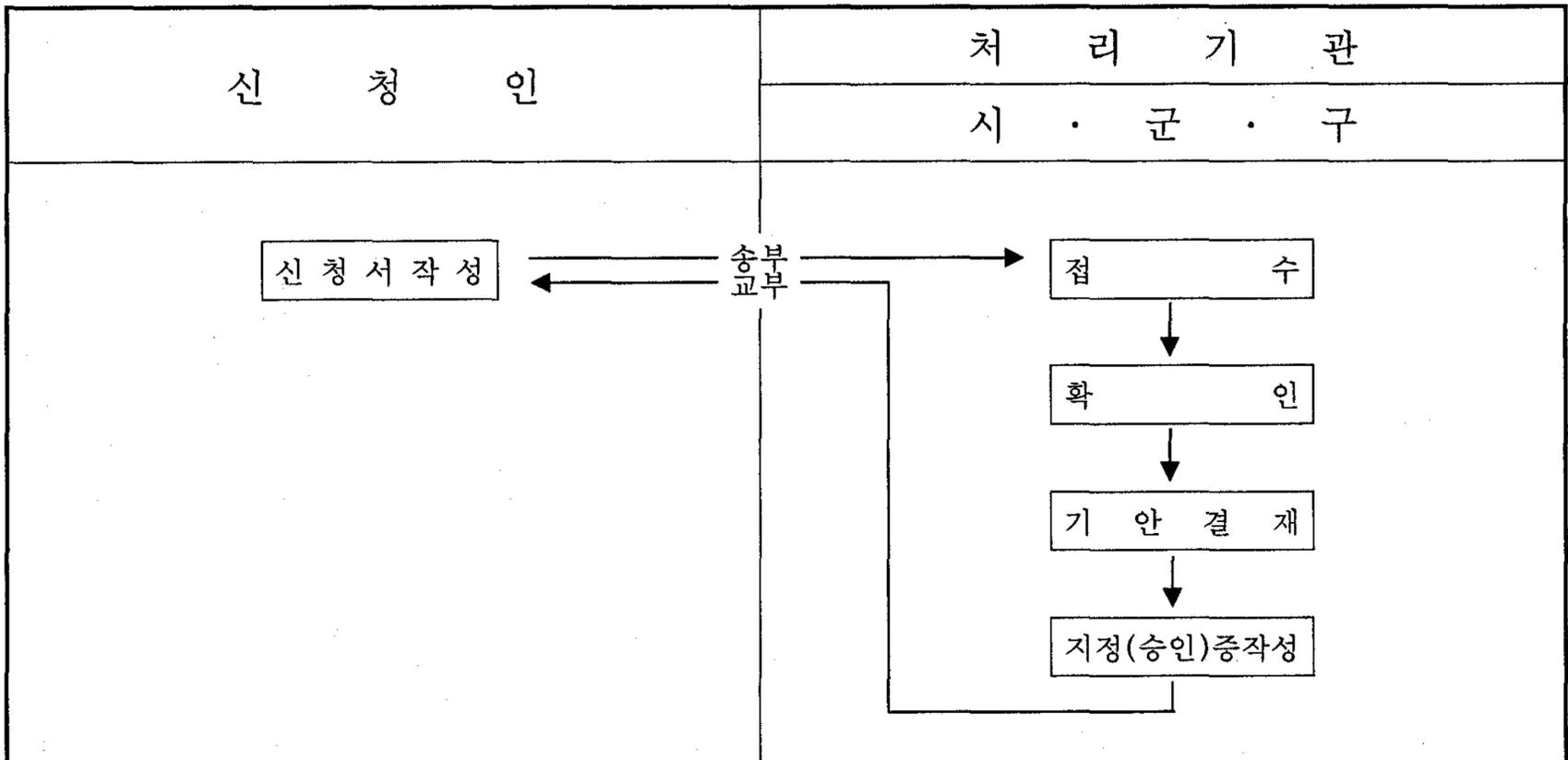
97. 2. 14 승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input type="checkbox"/> 관리선사용의 지정 <input type="checkbox"/> 어 선 사 용 승 인						신청서	처리기간 시·군·구 2일
신 청 인	①성명 또는 단체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 소(주사무소)						
사 용 인 (행사자)	④성명 또는 단체명		⑤주민등록번호		-		
	⑥주 소(주사무소)						
관리선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자 하는 어업권자	⑦어업권자	⑧어업의종류	⑨양식방법	⑩품종	⑪면허번호	⑫어장면적	
관리선으 로 사용 지정(승 인)받 고 자 하 는 어 선	⑬어 선 명	⑭어 선 번 호	⑮어업허가 종 류	⑯어업허가 번 호	⑰톤 수	⑱기관의 마 력	
	⑲관리선에 이용하는 장비		⑳어선건조연월일		㉑선 적 지		
「수산업법」 제27조제1항·제3항, 「수산업법 시행령」 제17조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선 사용의 지정(승인)을 신청합니다.						수수료 조례에 의함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48277-19811민

91.3.27 승인

190mm×268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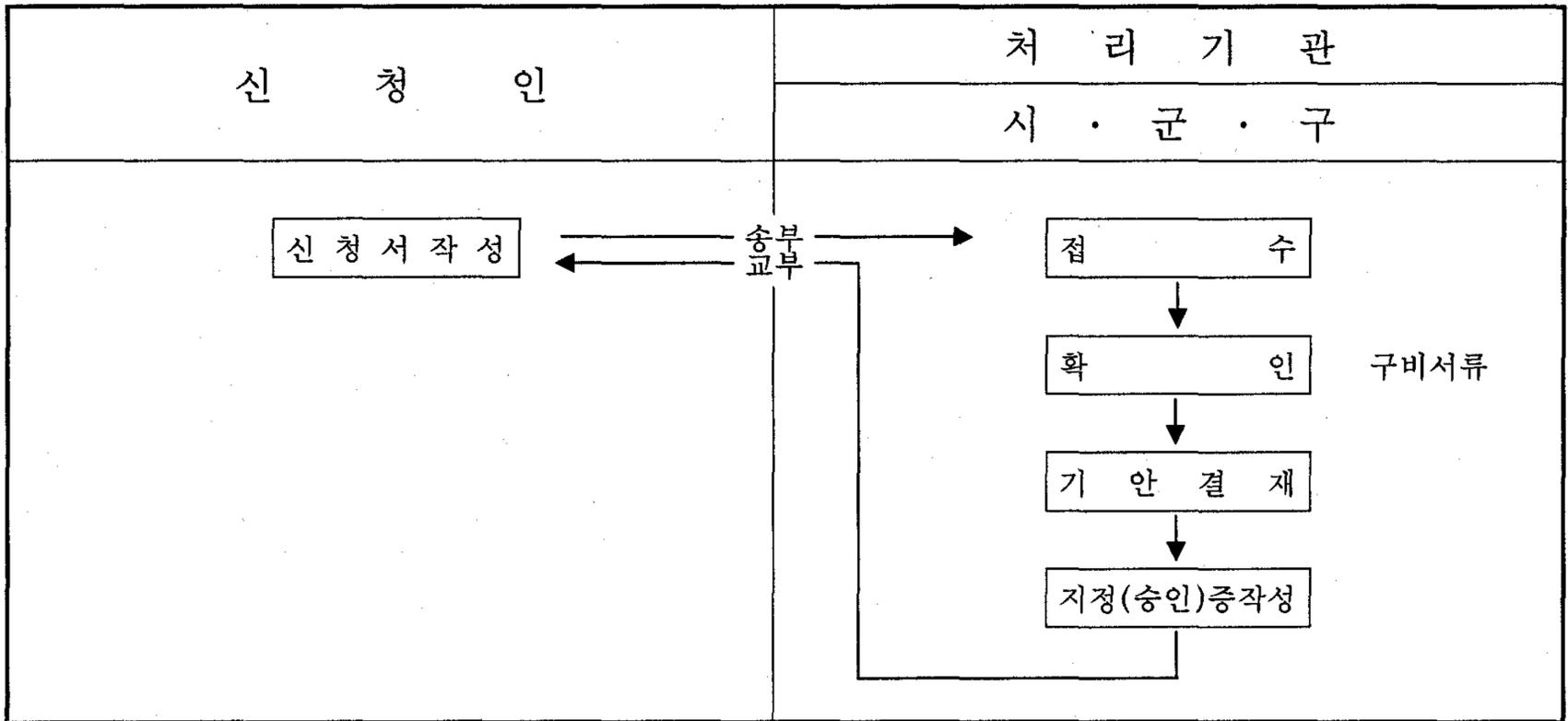
(신문용지 54g/㎡)

(뒷 면)

구비서류

1. 선박검사증서 사본, 선박국적증서 사본, 선박증서 사본 또는 등록필증 사본 및 타인 소유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 선박등기부등본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법 제27조제 1항의 경우에 한한다) 1부
2. 관리선사용지정증 사본 또는 어업허가증 사본(법 제27조제 3 항의 경우에 한한다) 1부
3.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어촌계총회의사록 사본(어촌계의 경우에 한한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97.3.24>

관리선사용의 지정(어선사용승인)대장(제26조제5항관련)

① 관리선 사용지 (승인) 번호	② 어업 권자	③ 사용인 (행사자)	④ 어업의 종 류	⑤ 어구 · 양식 방법	⑥ 품 종	사용지정(승인)한 관리선						
						⑦ 어업 허가 종류	⑧ 어업 허가 번호	⑨ 어선 명	⑩ 어선 번호	⑪ 톤 수	⑫ 마 력	⑬ 이용 장비

48277-19911비
91. 3. 27 승인

268mm×190mm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01. 3. 10>

관리선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증							
1. 관리선사용지정(승인)번호 및 기간							
①지정(승인)번호	제 - 호	②지정(승인)기간	. . . ~ . . .				
2. 관리선사용지정(승인)을 받은 어업권자							
③성명(단체명)		④주민등록번호	-				
⑤주소(주사무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3. 사용인(행사자)							
⑥성명(단체명)		⑦주민등록번호	-				
⑧주소(주사무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4. 관리선을 공동사용하고자 지정(승인)받은 어업권자 및 어업권							
⑨어업권자	⑩어업의 종류	⑪어구, 양식방법	⑫품종	⑬면허번호	⑭어장면적		
				제 호	ha		
				제 호	ha		
				제 호	ha		
				제 호	ha		
				제 호	ha		
5. 지정(승인)받은 관리선의 내용							
⑮어선명	⑯어선번호	⑰어업허가 종류	⑱어업허가 번호	⑲어선톤수	⑳기관마력	㉑이용장비	㉒선적지
<p>「수산업법」 제27조제1항·제3항과 「수산업법 시행령」 제17조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선사용을 지정(어선사용을 승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시장·군수·구청장 인</p>							

48277-20011일
91. 3. 27 승인

190mm×260mm
(인쇄용지(특급) 120g/㎡)

[별지 제32호서식] 내지 [별지 제34호서식] 삭제 <99. 8.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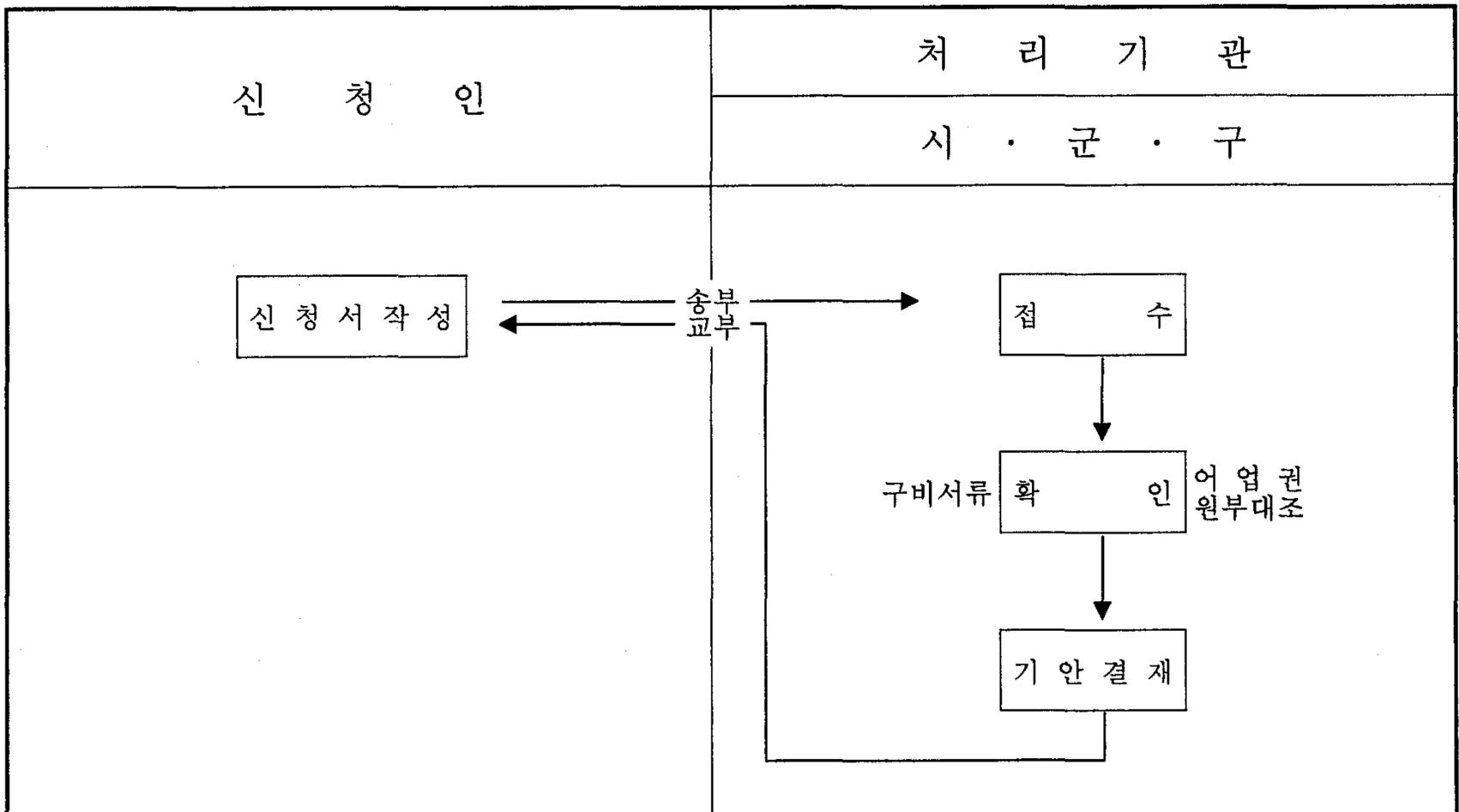
어업휴업(휴업연장)신고서(제29조제1항관련)				처리기간
				시·군·구 즉시
신고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④어업의종류			⑤면허번호	어업면허제 호
⑥면허기간		. . .부터		. . .까지
⑦휴업또는연장기간		. . .부터		. . .까지 년
⑧휴업또는연장사유				
<p>「수산업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을 휴업(휴업연장)하고자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어업권자 (서명 또는 인)</p> <p>시장·군수·구청장 귀하</p>				

48277-20411민
91. 3. 27 승인

190mm×268mm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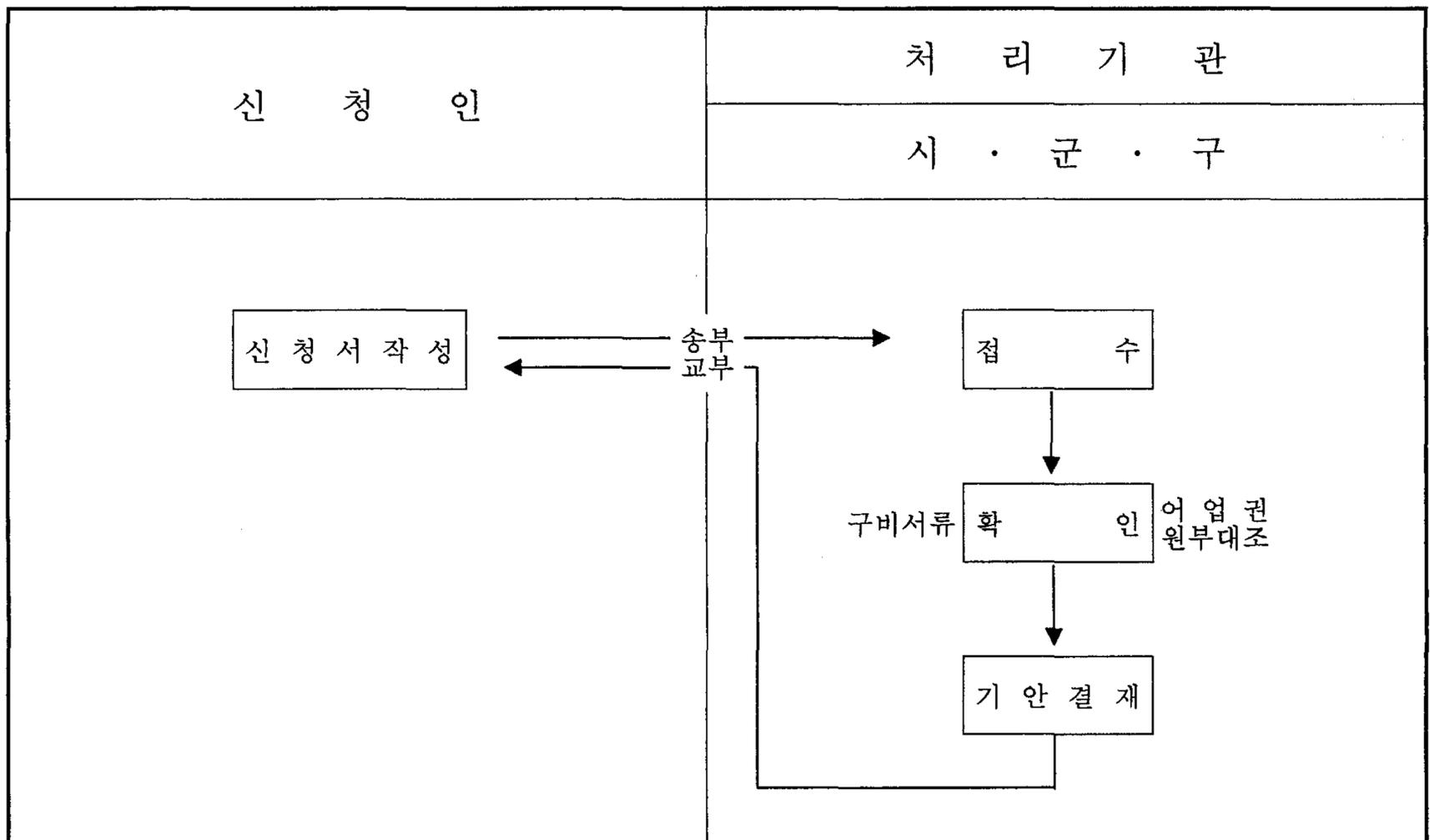
어업재개신고서(제29조제2항관련)				처리기간	
				시·군·구 즉시	
신고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④어업의종류			⑤면허번호	어업면허제호	
⑥휴업의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⑦재개하고자 하는 일자		년 월 일			
<p>「수산업법」 제30조제3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을 재개하고자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어업권자 (서명 또는 인)</p> <p>시장·군수·구청장 귀하</p>					

48277-20511민
91. 3. 27 승인

190mm×268mm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변경사항신고서 (□ 주소 · □ 개명 · □ 대표자 · □ 선명 · □ 설립목적) (제32조 및 제32조의2관련)		처리기간 시 · 군 · 구 2일
신고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시 · 도 시 · 군 · 구 읍 · 면 · 동 리 · 동 번지
④어 업 의 종 류		⑤수면번호 또는 면허번호
변 경 사 항		
어업면허신청자 (법인, 어촌계 포함)	⑥성 명	
	⑦주 소	시 · 도 시 · 군 · 구 읍 · 면 · 동 리 · 동 번지
어업권자(법인, 어촌계 포함)	⑧성 명	
	⑨주소 또는 주사무소	시 · 도 시 · 군 · 구 읍 · 면 · 동 리 · 동 번지
⑩법인 또는 단체의 설립목적		
⑪관 리 선 의 어 선 명		
⑫변 경 사 유		
「수산업법 시행령」 제24조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2조 및 제32조의2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어업면허증(어업권자의 경우에 한한다) 2.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조례에 의함

48277-20611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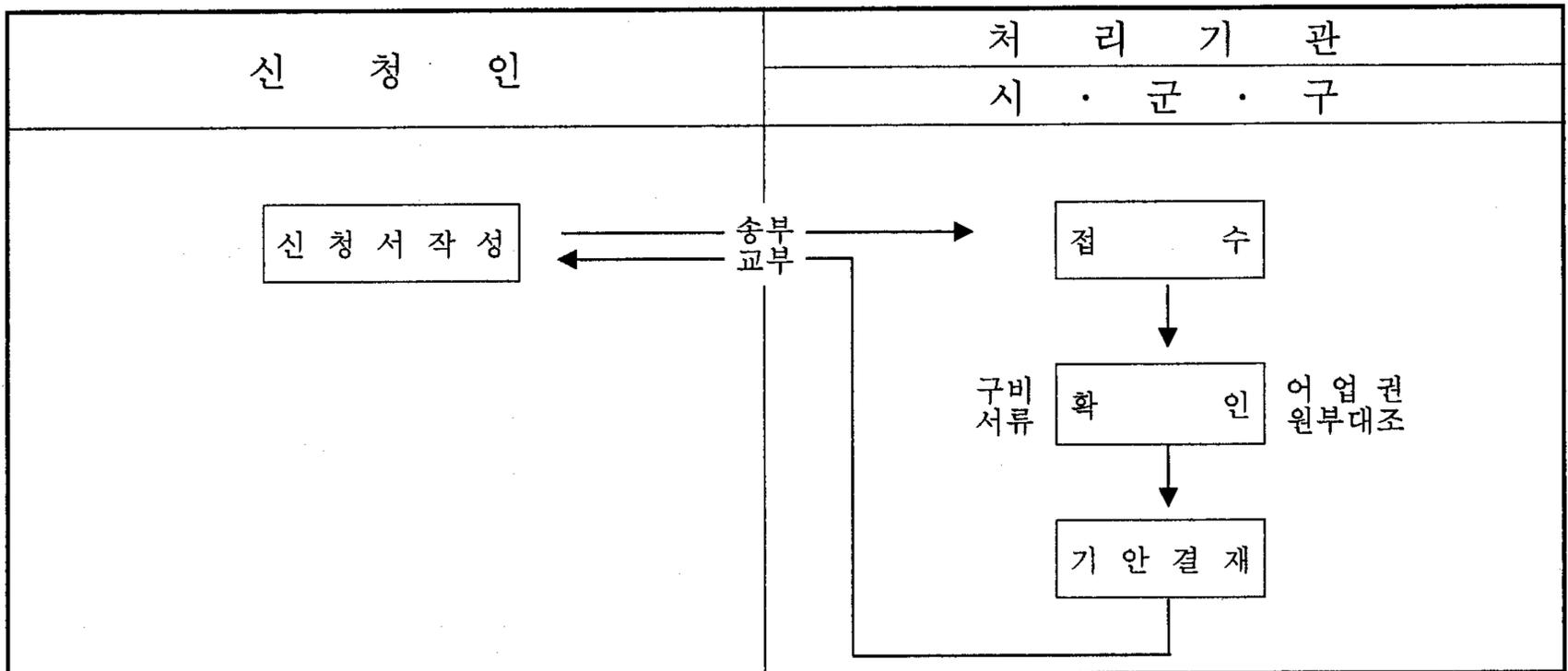
190mm×268mm

91. 3. 27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별지 제38호서식] <개정 2001. 3. 10>

()년도 () 어장자원조사보고서

면허번호		제 호		면허기간		년월일~년월일	
어업종류의 및 현황	어업종류			어구명칭·양식번호			
	어장면적	(장M×폭M) ^{ha}		어장의 시설규모			
	어장위치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어업권자	성명 또는 단체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어장관리	관리방법	<input type="checkbox"/> 직접관리, <input type="checkbox"/> 행사계약관리		행사자수	명	연간행사료	원
	관리 또는 행사 책임자	성명		주민등록 번호		부락명	부락
		주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생산 실적	포획·채취·양식물		연생 산량	kg	총판매 액	천원	
	포획·채취방법		조업 일수	일	어경 업비	천원	수익금 천원
어장 표지 시설	육상기점설치	어장경계시설		지정받은 관리선	척수	톤	톤
	<input type="checkbox"/> 시설함, <input type="checkbox"/> 안함	<input type="checkbox"/> ()개 시설함, <input type="checkbox"/> 안함			척	마력	마력
어장의 위반 관리 및 대장 작성 비치 여부	어장임대	어장빈대	무신고 업	관리규약위반	관리선 불법사용	무자격자 조업	
	생산일지	어장관리부	회계 부	회의 록	증빙서류	기타	
시설 기준 준수 여부	어장별 구분	정 치 망 어 장		양 식 어 장			
		어구시설규모	가두리시설규모	종묘살포량		시설비율	
	시설기준량	ha	m ²	M/T		%	
실시량	ha	m ²	M/T		%		
자 원 의 보 호 · 관 리	유해생물 없애기	어장오물 없애기		수 산 법 규 위 반 여 부			
	회 kg	회 kg					
조사자의 종합의견							
조치결과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어업권자 : 귀하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48277-05511보

93. 3. 28 승인

257mm×364mm

(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38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40호서식] 삭제 <99. 3. 18>

[별지 제41호서식] <개정 97.3.24>

()어업권관리대장

어업의 종류 ()어업		어구의 명칭 또는 양식방법			어장면적		(ha)	
면허번호		제 호		어장 위치	시·도 리·동	시·군·구 번지	읍·면·동	
어업 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단체명	
	주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계원수 명
면허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어업권 연장 허가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양식시설량						년 월 일 ~ 년 월 일		
포획·채취방법						년 월 일 ~ 년 월 일		
어업의시기		월 일 ~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포획·채취물 또는 양식물의 종류					가두리시설규모 (㎡)			
공익상 지장여부		군사관계	어항	개항	특정지역	공원	항로	기타 관계법령
어장관리규약		승인번호 제()호, 승인일(년 월 일)				행사자선정방법		
어장의 관리선 사용	종류	지정받은 관리선			승인받은 관리선			
	어선등록번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호톤수(톤)							
	마력(마력)							
어장의 행사 계약 관리	회수	행사자의 대표 및 수		행사자 신분	행사계약기간			행사료 (천원)
	1차	()명			년 월 일 ~ 년 월 일			
	2차	()명			년 월 일 ~ 년 월 일			
	3차	()명			년 월 일 ~ 년 월 일			
	4차	()명			년 월 일 ~ 년 월 일			
	5차	()명			년 월 일 ~ 년 월 일			
수법 위반 사항	회수	위반사항			경고일		시정일	
	1차							
	2차							
	3차							
	4차							
어업권이전·분할 또는 변경인가사항								
기타 기재사항 ※ 공익상지장여부란에는 “있음”, “없음”으로 기재하고, “행사자 신분”란에는 “어촌 계원”등을 기재함 ※ 어장도 별첨								

48277-04111비
93.12.13 승인

257mm×364mm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42호서식] 내지 [별지 제45호서식] 삭제 <99.8.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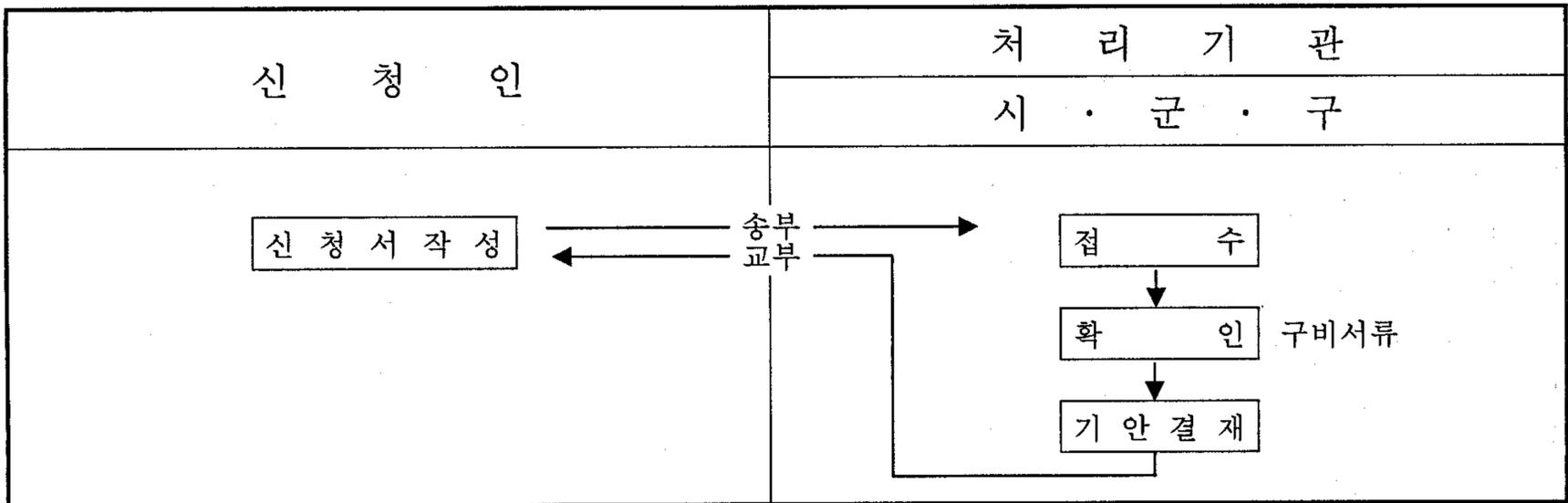
어장시설물의 철거의무면제(연장)신청서 (제43조제2항 및 제3항관련)				처리기간 시·군·구 2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어업의 종류		⑤시설어구 또는 양식방법			
⑥면허번호	제 호	⑦면적	ha	⑧품종	
⑨수면의 위치와 구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철거의무를 면제(연장)받고자 하는 어장시설물					
⑩시설물의 종류		⑪시설물의 규모(m ²)		⑫수량(개)	
⑬시설물의 철거의무면제(연장)을 받고자 하는 사유					
「수산업법」 제58조제 1 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3조제 2 항 및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장시설물의 철거의무면제(연장)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수수료 조례에 의함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48277-21111민
91. 3. 27 승인

190mm×268mm
(신문용지 54g/m²)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별지 제47호서식] 내지 [별지 제50호서식] 삭제 <99. 8. 26>

[별지 제51호서식] <삭제 2002. 4. 9>

[별지 제52호서식] <개정 97·3·24>

(/분기)해면어업면허처분상황보고서(제50조관련)

가. 총괄표(년 월 일 현재)

(단위 : 건, ha)

어업별	구분	전분기말 어업권		분기중포기 어업권		분기중취소 어업권		분기중면허 어업권		금분기말 어업권	
		건 수	면 적	건 수	면 적	건 수	면 적	건 수	면 적	건 수	면 적
정 치 망 어 업											
해 조 류 양 식 어 업											
패 류 양 식 어 업											
어 류 등 양 식 어 업											
복 합 양 식 어 업											
협 동 양 식 어 업											
마 을 어 업											

※ 자연소멸어업권은 분기중 포기어업권란에 기재한다.

나. (/)분기 해면어업 처분실적

어업의 명칭	면허 번호	어업권자		면허 면적 (ha)	면허 기간	어업권 이전인가		어업권 변경인가		기타변동 및 처분 사항	경고,취소 및 포기 사유	처 분 연월일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변경 전	변경 후			

48277-03211보

85.3.5 승인

268mm×380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53호서식] 및 [별지 제54호서식] 삭제 <2001·3·10>

[별지 제55호서식] <개정 2005·3·31>

(앞 면)

어업권등의 보상청구서(제51조제1항관련)				처리기간	
				시·군·구 10일	
신청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 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어업권 또는 공작물의 표시	④어업의 종류	어업		⑤면 허 번 호	제 호
	⑥공작물의 종류			⑦공작물의 규모	㎡
⑧처 분 사 항			⑨처 분 일 자	년 월 일	
손실의 내용	⑩손 해 액				
	⑪내 역				
	⑫산출근거				
⑬손실액과 내역 및 산출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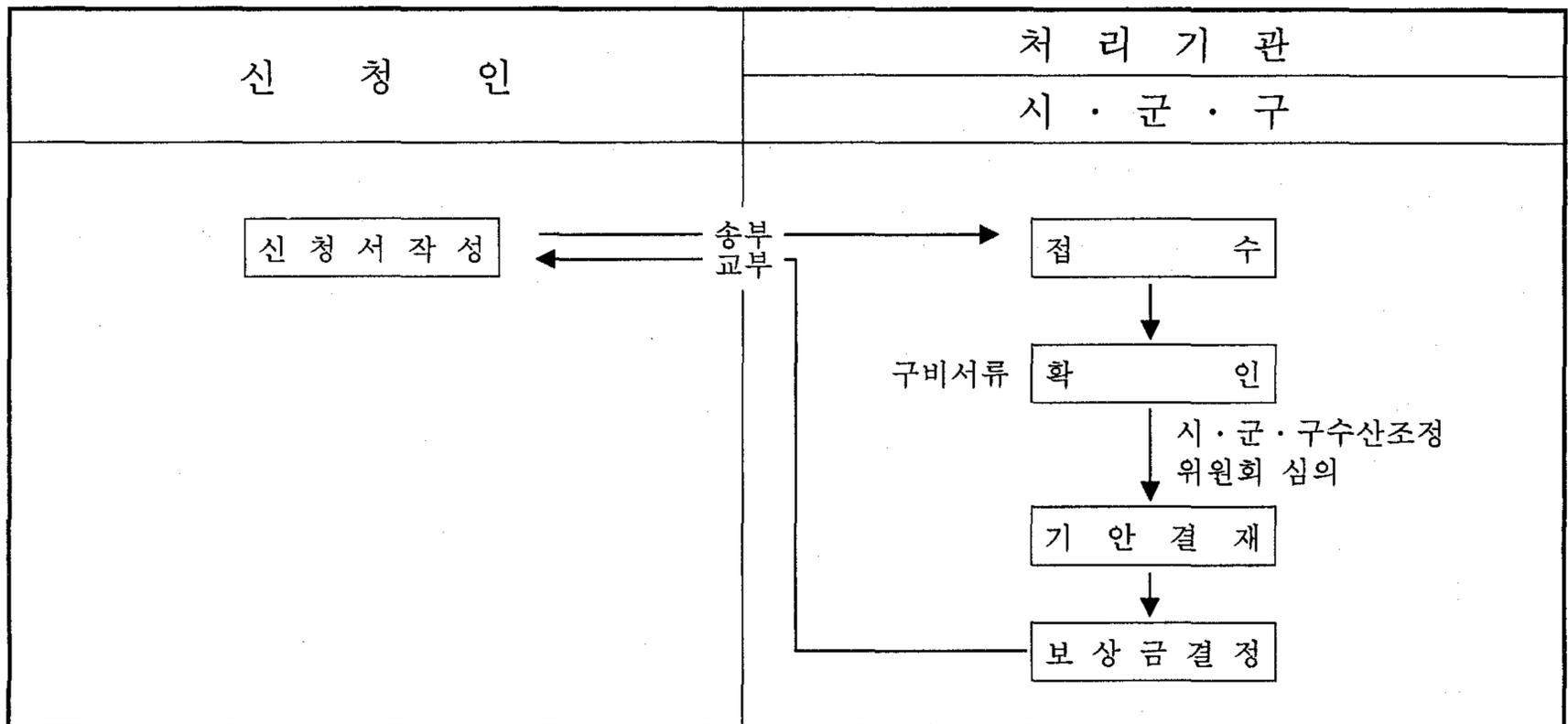
⑭청 구 보 상 금 액 일금	원정	
<p>「수산업법」 제81조제 1 항과 「수산업법 시행령」 제61조제 1 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1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권등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 신청합니다.</p>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1. 손실액과 그 내역 및 산출방법에 관한 증빙서류 1부 ※ 기재요령 : ①~③의 난에는 법 제74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명령을 받은 자(법인 또는 단체포함)도 포함하여 기재한다.	수수료	조례에 의함

48277-21711민
91.3.27 승인

190mm×268mm
(신문용지 54g/m²)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별지 제55호의2서식] <개정 2001·3·10>

기	관	명
주 소	전화번호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발 신(신청기관) (인)
제 목	어업손실액 조사기관의 지정신청	
<p style="text-align: center;">「수산업법 시행령」 제62조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손실액조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p>		

신청기관의 설립근거	근 거 법 령		
	허 가 기 관		
	허 가 번 호		
	설 립 일 자		
기관의 대표 및 구성원수	대표자	성 명	
		주 소	
	조사기관의 조사 구성원 수		
	상임조사자 수	특별조사자 수	보조조사자 수
지정 받고자 하는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붙 임 1. 손실액 조사계획서 1부 2. 기관설립증서 사본 1부 3. 기관의 조직표 1부. 끝.			

48277-26511민
93.12.13 승인

210mm×297mm
(인쇄용지(2급) 60g/m²)

[별지 제55호의3서식] <개정 2001.3.10>

어업의 손실액조사기관지정서						
기 관 명						
주 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1. 지정번호	어업손실액조사기관지정 제			호		
2. 대 표 자						
	성 명		직 위			
	주 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3. 조사자 구성원 수						
	상임조사자 수	특별조사자 수		보조조사자 수		
	(명)	(명)		(명)		
4. 지정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수산업법 시행령」 제62조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어업의 손실액조사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48277-26511일
93.12.13 승인

210mm×297mm
(인쇄용지(2급) 60g/m²)

[별지 제56호서식] 삭제 <99·8·26>

[별지 제57호서식] <개정 2005·3·31>

(앞 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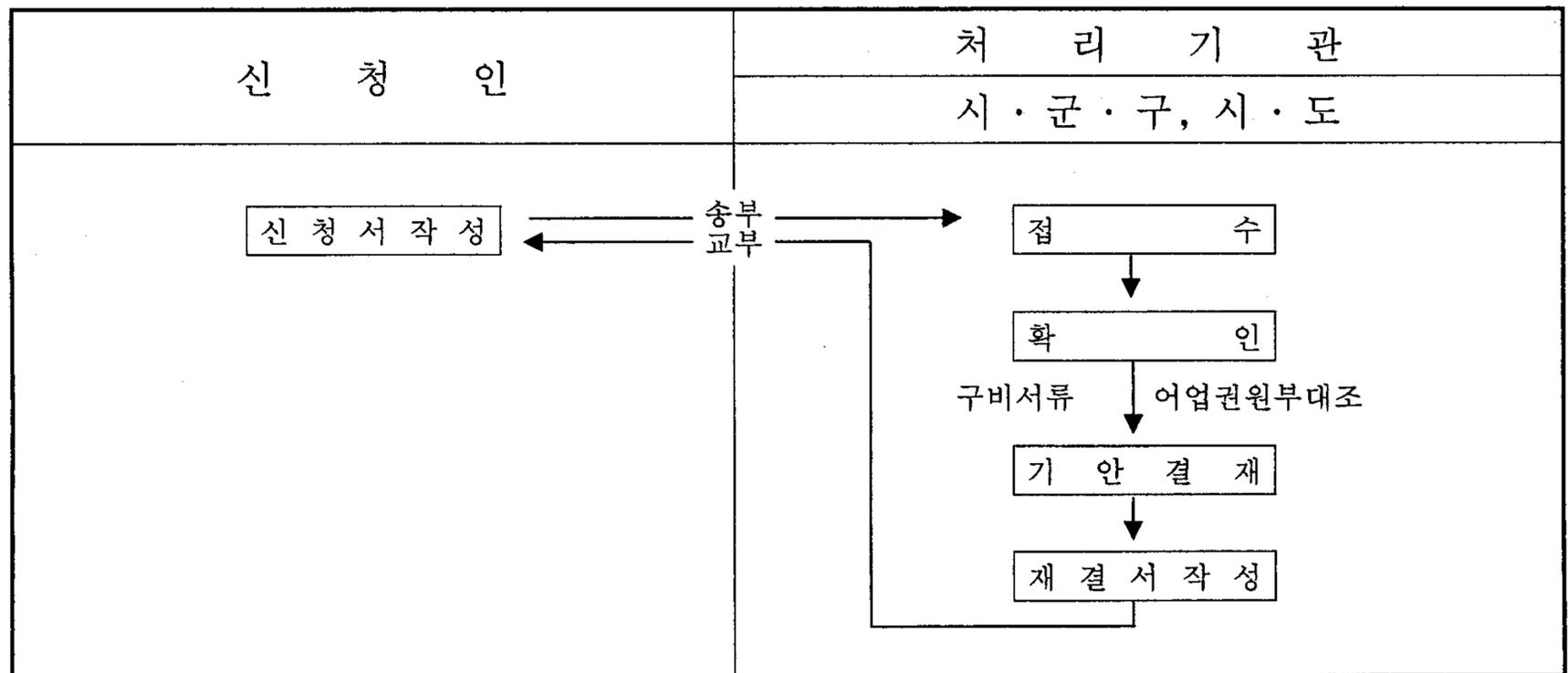
입어재결신청서		처리기간	
		시·군·구	14일
		시·도	14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
피신청인	④성명		⑤주민등록번호
	⑥주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
⑦어업의종류		어업	⑧면허번호 제 호
⑨제한을 하고자 하는 사항			
⑩제한을 하고자 하는 시기와 기간		시 기 기 간	시 분부터 시 분까지 년 월 일 ~ 년 월 일
⑪신청인의 목적과 사유		목적	사유
<p>「수산업법」 제85조제1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어에 관한 재결을 받고자 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고인 (서명 또는 인)</p> <p>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시·도지사 귀하</p>			
구비서류 관계인과의 협의경위서 1부		수수료 조례에 의함	

48277-21911민
91.3.27 승인

190mm×268mm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별지 제59호서식] <개정 97·3·24>

재 결 서(제52조제3항관련)				
문서번호				
신청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 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피신청인	④성 명		⑤주민등록번호	-
	⑥주 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⑦신청의 취지				
⑧재결의 주문				
⑨사 유				
주문과 같이 재결함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인				

48277-22111일

91.3.27 승인

190mm×268mm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60호서식] 삭제 <2003·7·15>

[별지 제61호서식] 삭제 <2003·7·15>

여 백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2005.3.31

해 양 수 산 부

여 백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중 “법 제30조제1항”을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휴업을”을 “휴업을 하거나 휴업기간을 연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휴업의 신고”를 “휴업신고 또는 휴업기간연장신고”로, “법 제30조제2항”을 “법 제30조제3항”으로 한다.

제32조 각호외의 부분중 “어업의 면허를 신청한 자 또는 어업권자가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사항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을 “어업권자가 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면허사항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일부터 30일이내에”로 하고, 제32조의2제1항중 “당해 어업권자는”을 “당해 어업권자는 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로, “신고”를 “제출”로 하며, 제3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영 제24조제2항”을 “법 제30조제5항”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가목 1.건홍식의 양식물란중 “김·파래”를 각각 “김, 파래, 매생이”로, 동목 1.건홍식 부류망홍의 어장의 수심란중 “30”을 “40”으로 하고, 동표 제2호다목의 어장구역의 한계란중 “0.5 내지 5”를 각각 “0.5 내지 10”

으로 하며, 동목 어장사이의 거리란중 “300”을 “100”으로 하고, 동표 제3호 중 가. 가두리양식어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가두리식 양식어업	1. 가두리식	어류, 갑각류, 두족류, 해삼	30 이내	0.5 내지 10	0.5 내지 10	300 이상
	2. 외해(중층) 가두리식	어류	70 이내	1 내지 10	1 내지 10	500 이상

별표 3 제3호나목의 양식물란중 “어류·갑각류”를 “어류, 갑각류, 해삼”으로, 동목의 어장의 수심란중 “10”을 “20”으로 하고, 동표 제4호가목 1.연승식의 어장의 수심란중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강원도·경상북도 및”을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강원도 및 경상북도의 경우에는 70 이내,”로 하며, 동표 제4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여 라목으로 하고, 동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축제식 양식어업	축제식	어류·해삼, 갑각류·해삼	20 이내	0.5 내지 20	1 내지 20	-
라. 혼합양식어업	1. 건홍식과 살포식	김·바지락, 김·동죽, 김·개량조개, 파래·바지락	7 이내	1 내지 100	1 내지 20	200 이상
	2. 연승식과 천해투석식	툰·전복, 다시마·전복, 미역·전복	30 이내	1 내지 20	1 내지 20	200 이상
	3. 침하식과 연승식	전복·미역, 전복·다시마, 전복·미역·다시마	30 이내	0.5 내지 10	0.5 내지 5	100 이상
	4. 가두리식과 연승식	전복·미역, 전복·다시마, 전복·미역·다시마	30 이내	0.5 내지 10	0.5 내지 10	100 이상

별표 3 제5호 다음에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 시·도지사는 이미 면허를 받은 양식어장의 면허를 동시에 갱신하는 경우와 어장정비실적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당해 어업권의 어장면적과 동일한 어장면적의 범위안에서 어장구역의 한계 또는 어장사이의 거리를 조정하여 정할 수 있다.

별표 6 제1호가목 1.건홍식의 양식물란중 “김·파래”를 각각 “김, 파래, 매생이”로, 동목의 어장면적에 대한 시설비율란중 “10 내지 18”을 각각 “5 내지 18”로 하고, 동표 제2호가목 2.연승식 시설규모란중 “6.5미터”를 “5미터(조립전 수하연길이 6.5미터)”로 하며, 동표 제3호가목의 가두리식 양식 어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가두리식 양식어업	1. 가두리식	어류, 갑각류, 두족류, 해삼	25제곱미터당 1대(그물길이 가로 5미터, 세로 5미터. 다만, 시설방법 또는 양식물에 따라 그물의 길이 및 형태를 달리 할 수 있다)	5 내지 20
	2. 외해(중층) 가두리식	어류	25제곱미터당 1대(그물길이 가로 5미터, 세로 5미터. 다만, 시설방법 또는 양식물에 따라 그물의 길이 및 형태를 달리 할 수 있다)	5 내지 20

별표 6 제3호나목의 양식물란중 “어류·갑각류”를 “어류, 갑각류, 해삼”으로 하고, 동표 제4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여 라목으로 하고, 동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축제식양식 어업	축제식	어류·해삼, 갑각류·해삼	1헥타르당 종묘살포량 2만마리 이상	20 이상
라. 혼합양식 어업	1. 건홍식과 살포식	김·바지락, 김·동족, 김·개량조개, 파래·바지락	김, 파래 : 100제곱미터당 1책(2.2미터×40미터) 바지락, 동족, 개량조개 : 1헥타르당 종묘살포량 2톤 내지 3톤	5 내지 18 80 이상
	2. 연승식과 천해투석식	툰·전복, 다시마·전복, 미역·전복	툰, 다시마, 미역 : 50제곱미터당 1줄(100미터) 전복 : 1헥타르당 투석량 1천200개 이상(1개당 40킬로그램 이상) 및 종묘 2만마리 이상 살포	5 내지 10 80 이상

	3. 침하식과 연승식	전북·미역, 전북·다시마, 전북·미역·다시마	전북 : 25제곱미터당 1개(가로 3미터 내지 5미터, 세로 3미터 내지 5미터, 높이가 2.5미터 내지 5미터 이상) 및 1헥타아르당 종묘 2만마리 이상 미역, 다시마, 미역·다시마 : 50제곱미터당 1줄(100미터)	5 내지 10
	4. 가두리식과 연승식	전북·미역, 전북·다시마, 전북·미역·다시마	전북 : 25제곱미터당 1대(그물길이 가로 5미터, 세로 5미터. 다만, 시설방법 또는 양식물에 따라 그물의 길이 및 형태를 달리할 수 있다) 미역, 다시마, 미역·다시마 : 50제곱미터당 1줄(100미터)	5 내지 10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6호의2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28호의3서식,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별지 제46호서식, 별지 제55호서식, 별지 제57호서식 및 별지 제58호서식 중 수수료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수수료
조례에 의함

제1조중 “수산업법”을 “「수산업법」”으로, “동법시행령”을 “동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6조제1호중 “측량법 또는 지적법”을 “「측량법」 또는 「지적법」”으로 하며, 제9조제2호 본문중 “토지수용법 제3조”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하고, 제26조제1항제1호 전단중 “어선법”을 “「어선법」”으로 하며, 동조제2항제1호중 “어선법시행규칙”을 “「어선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제26조의3제2호중 “선박안전법”을 “「선박안전법」”으로 한다.

별표 8의 관리선의 규모란중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을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55호의2서식 및 별지 제55호의3서식중 “수산업법시행령”을 각각 “「수산업법 시행령」”으로, “어업면허의관리등에관한규칙”을 각각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28호의3서식 및 별지 제38호서식중 “어업면허의관리등에관한규칙”을 각각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46호서식, 별지 제57호서식 및 별지 제58호서식중 “수산업법”을 각각 “「수산업법」”으로, “어업면허의관리등에관한규칙”을 각각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중 “수산업법”을 “「수산업법」”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의2서식 및 별지 제16호의3서식중 “수산자원보호령”을 각각 “「수산자원보호령」”으로, “어업면허의관리등에관한규칙”을 각각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및 별지 제55호서식중 “수산업법”을 각각 “「수산업법」”으로, “수산업법시행령”을 각각 “「수산업법 시행령」”으로, “어업면허의관리등에관한규칙”을 각각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중 “수산업법시행령 제24조제2항”을 “「수산업법」 제30조제5항”으로, “어업면허의관리등에관한규칙”을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하고, 별지 제35호서식의 제목 및 하단중 “휴업”을 “휴업(휴업연장)”으로 하며, 동서식중 “⑦휴업의 기간”을 “⑦휴업 또는 연장 기간”으로, “⑧휴업의 사유”를 “⑧휴업 또는 연장 사유”로, “수산업법 제30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으로, “어업면허의관리등에관한규칙”을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하고, 별지 제36호서식중 “수산업법 제30조제2항”을 “「수산업법」 제30조제3항”으로, “어업면허의관리등에관한규칙”을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하며, 별지 제37호서식의 제목중 “(제32조관련)”을 “(제32조 및 제32조의2관련)”으로 하고, 동서식중 “수산업법시행령 제24조제1항”을 “「수산업법 시행령」 제24조”로, “어업면허의관리등에관한규칙”을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 제32조, 제34조제1항, 별표 3 제4호다목 및 라목, 별표 6 제4호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2. (생략)

제32조의2(면허어업의 취소) ①어업권자가 법 제35조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어업권자는 그 해당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34조(어업권포기의 신고) ①어업권자는 영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장구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고자 하거나 2인 이상의 자가 공유로 취득한 어업권에 대한 지분의 일부를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2. (생략)

② (생략)

터 30일 이내에

1. 2. (현행과 같음)

제32조의2(면허어업의 취소) ①어업권자는 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

②·③ (현행과 같음)

제34조(어업권포기의 신고) ①법 제30조제5항

1.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